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발 간 등 록 번 호
77-6450000-000260-01

2014년
원가심사 사례집

전라북도

Contents

Ⅰ 개요 및 성과 3

1. 원가심사제도 개요 ····· 5
2. 원가심사 처리절차 ····· 6
3. 원가심사 주요성과 ····· 10

Ⅱ 분야별 사례 13

1. 토목 분야 ····· 15
2. 건축 분야 ····· 45
3. 설비 분야 ····· 61
4. 용역(기술·학술·일반) 분야 ····· 85
5. 물품 제조·구매 분야 ····· 97
6. 시·군 자체심사 분야 ····· 103

Ⅲ 부 록 113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115
2.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 193
3.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편람 ····· 207
4. 설계용역 대가기준 ····· 253
5. 원가심사 관련기관 홈페이지 ····· 291

2014년 원가심사 사례집

Ⅰ. 개요 및 성과

1. 원가심사제도 개요
2. 원가심사 처리절차
3. 원가심사 주요성과

1. 원가심사제도 개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있어 적정한 원가산출과 창의적 공법 적용 등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

1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4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2 대상기관 및 사업

가. 대상기관 : 도 및 시·군(사업소, 출연기관 등 포함)
나. 심사 대상사업

구 분		도 사업	국·도비 지원 시·군사업
공사	신 규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3억원 이상)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3억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증가 **(1회 또는 2회이상 누적금액)**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증가 **(1회 또는 2회이상 누적금액)**
용 역		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5천만원 이상)	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7천만원 이상)
물 품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다.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등

2. 원가심사 처리절차

1 업무처리 절차도

1)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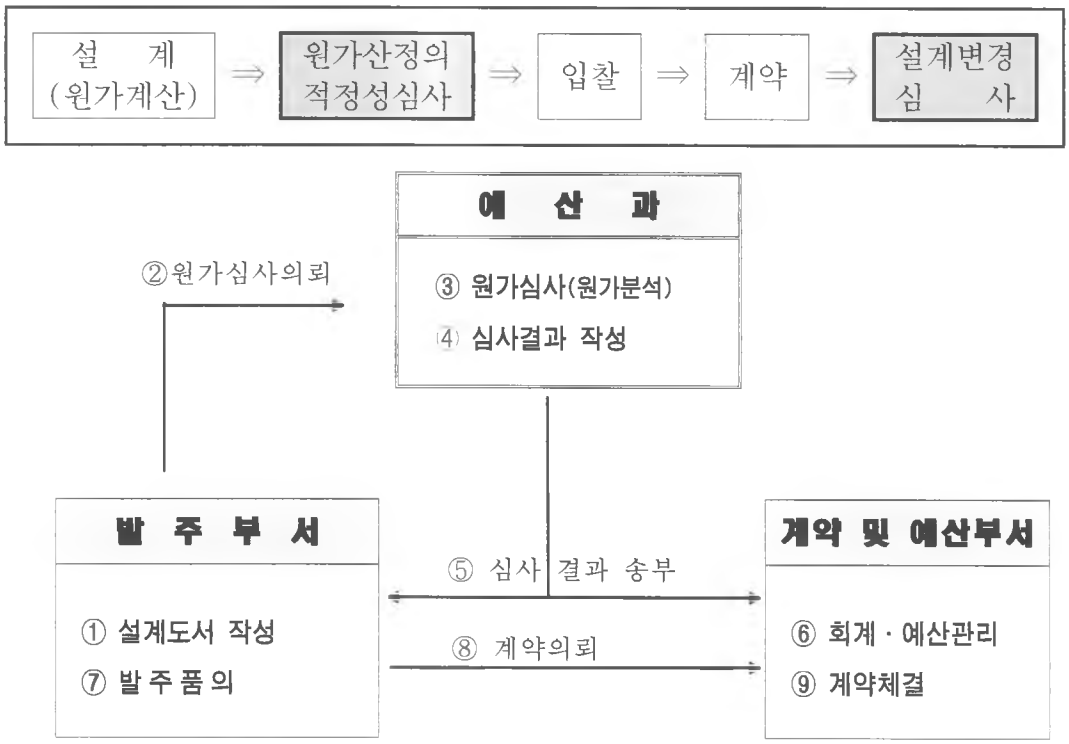

2) 심사 처리절차 - 처리기한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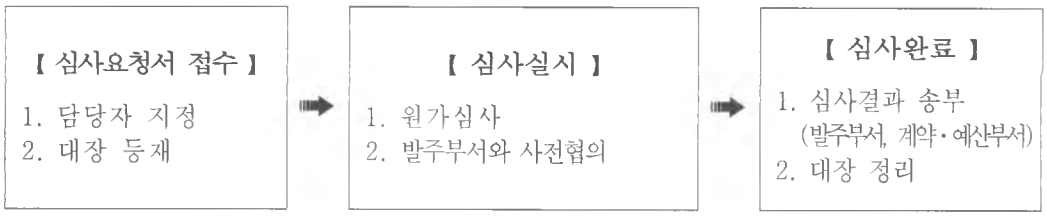

가. 공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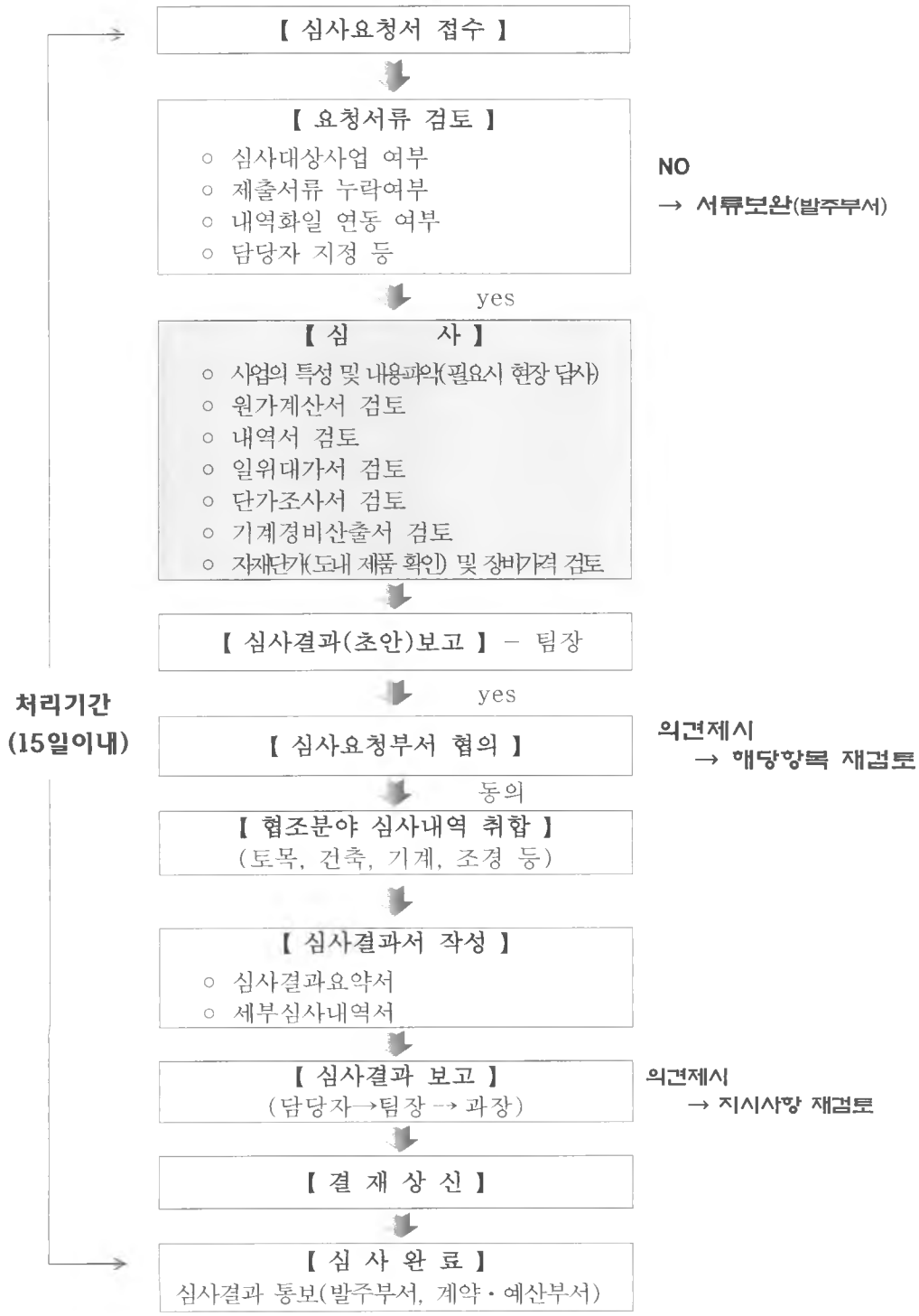
【 심사요청서 접수 】
【 요청서류 검토 】
○ 심사대상사업 여부
○ 제출서류 누락여부
○ 내역화일 연동 여부
○ 담당자 지정 등
NO
→ 서류보완(발주부서)
yes
【 심 사 】
○ 사업의 특성 및 내용파악(필요시 현장 답사)
○ 원가계산서 검토
○ 내역서 검토
○ 일위대가서 검토
○ 단가조사서 검토
○ 기계경비산출서 검토
○ 자재단가(도내 제품 확인) 및 장비가격 검토
【 심사결과(초안)보고 】 – 팀장
yes
【 심사요청부서 협의 】
의견제시
→ 해당항목 재검토
동의
【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 심사결과서 작성 】
○ 심사결과요약서
○ 세부심사내역서
【 심사결과 보고 】
(담당자→팀장→과장)
의견제시
→ 지시사항 재검토
【 결 재 상 신 】
【 심 사 완 료 】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계약·예산부서)
처리기간
(15일이내)

나. 용역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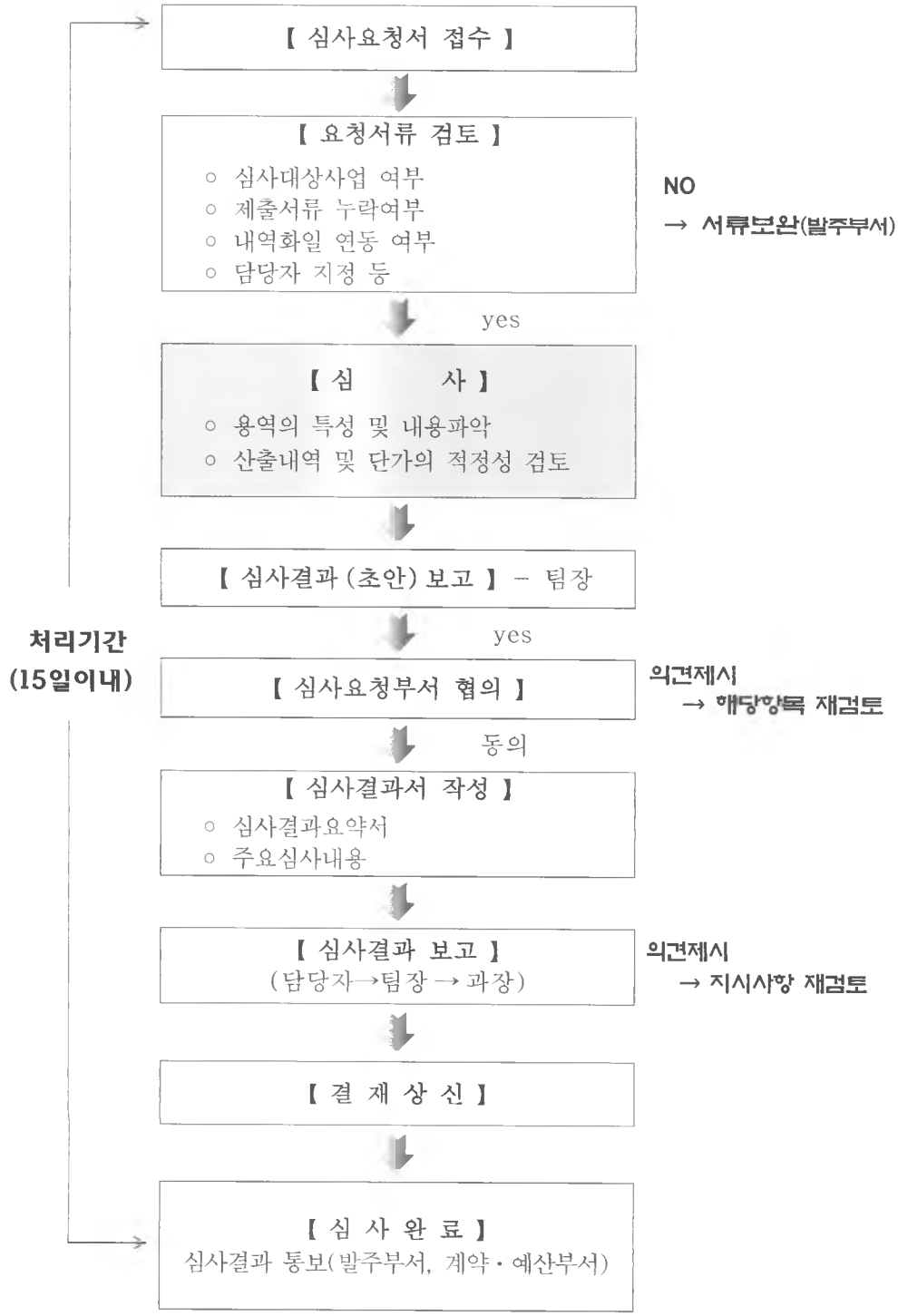
【 심사요청서 접수 】
【 요청서류 검토 】
○ 심사대상사업 여부
○ 제출서류 누락여부
○ 내역화일 연동 여부
○ 담당자 지정 등
NO
→ 서류보완(발주부서)
yes
【 심 사 】
○ 용역의 특성 및 내용파악
○ 산출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 심사결과 (초안) 보고 】 – 팀장
yes
처리기간
(15일이내)
【 심사요청부서 협의 】
의견제시
→ 해당항목 재검토
동의
【 심사결과서 작성 】
○ 심사결과요약서
○ 주요심사내용
【 심사결과 보고 】
(담당자→팀장→과장)
의견제시
→ 지시사항 재검토
【 결 재 상 신 】
【 심 사 완 료 】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계약·예산부서)

다. 물품 제조·구매 분야(인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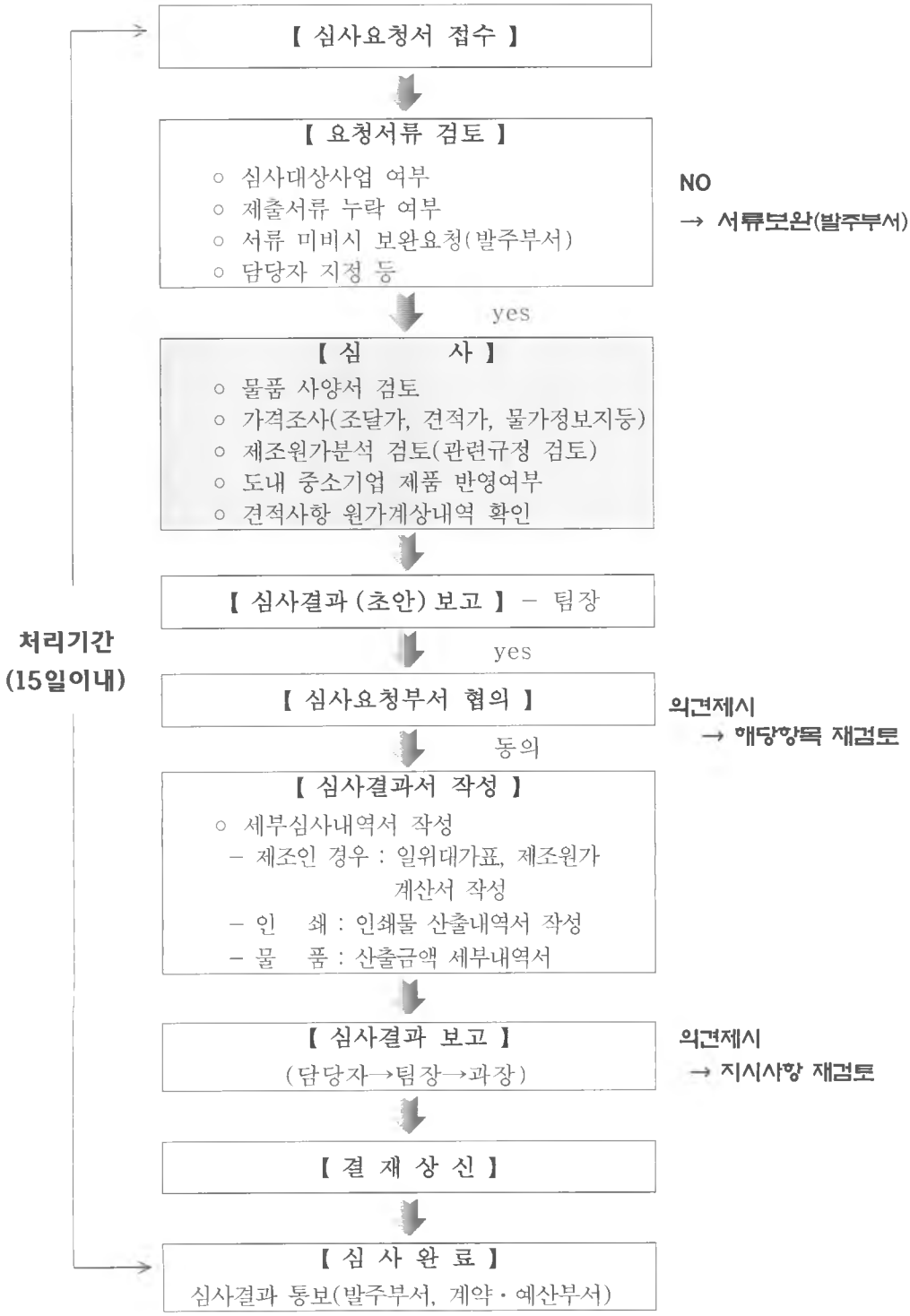

3. 원가심사 주요성과

1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합 계		3,600	36,384	34,120	2,264	△6.2
2008(도심사)		32	149	122	27	△18.4
2009(도심사)		240	1,416	1,294	122	△8.6
2010	소계	385	2,477	2,275	202	△8.2
	도	212	978	900	78	△8.0
	시·군	173	1,499	1,375	124	△8.3
2011	소계	816	7,403	6,805	598	△8.1
	도	196	829	787	42	△5.1
	시·군	620	6,574	6,018	556	△8.5
2012	소계	820	8,421	7,970	451	△5.4
	도	197	694	671	23	△3.3
	시·군	623	7,727	7,299	428	△5.5
2013	소계	687	8,567	8,117	450	△5.2
	도	158	926	901	25	△2.7
	시·군	529	7,641	7,216	425	△5.6
2014	소계	620	7,951	7,537	414	△5.2
	도	147	954	926	28	△2.9
	시·군	473	6,997	6,611	386	△5.5

2 평가 및 분석

가. 총 평

1) 사전협의로 원가심사의 인식 전환

○ 사업예산을 원가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인식하고 오해하고 있으나, 관련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원가심사를 하고 있으며,

○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경제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제도"라는 행정홍보와 현장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가심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과소 설계된 원가는 증액시키는 등 안정적인 원가심사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2) 실질적인 원가심사 추진

○ **예산절감 주요사례**

· 설계자가 사업비 등 과다 산출한 설계도서를 발주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가심사를 요구함으로써 절감예산 발생

· 원가심사 과정에서 창의적 기법을 살린 경우로 작업공정을 조정, 현장에 맞는 공법도입 등으로 예산절감

○ **예산증액 주요사례**

· 노임, 표준품셈 등을 최신자료가 아닌 과거자료로 산출하여 부득이 사업예산을 증액

· 설계단계부터 사업예산에 맞추기식 설계를 하면서 자재비 및 노임, 품셈 등을 일률적으로 하향 설계된 경우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증액

➡ 원가심사는 예산절감만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원가반영으로 부실공사 방지 효과를 거양

나. 연도별 예산절감율의 변화

○ 원가심사제도의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예산 절감률이 낮아지고 있음.

○ 절감율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 주요사례 전파,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능력 향상 등으로 분석됨.

2014년 원가심사 사례집

Ⅱ. 분 야 별 사 례

1. 토 목 분 야
2. 건 축 분 야
3. 설 비 분 야
4. 용역(기술 · 학술 · 일반) 분야
5. 물품 제조 · 구매 분야
6. 시 · 군 자체 심사 분야

1. 토목 분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817m, B=6.0m
- L형측구 920M, 옹벽형 L형측구 602M, 수로관(600×600) 672M
- 아스팔트포장 41a, 가드레일 93경간, 미끄럼방지포장 44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포장두께결정방법변경 : AASHTO설계법(60cm) → 한국형포장설계법(45cm)

○ 유용토 덤프운반 : 현장내 운반으로 덮개시간(t5) 제외

○ 암거공 펌프카 타설능력 조정 : 50~100㎥급 → 100~300㎥급

○ 골재운반 D/T20ton 덮개시간 조정 : 3.77min(인력) → 0.5min(자동)

○ 보조기층재 수량 조정 : 단위중량 중복 계상 제외

○ 현장사무소 면적 조정 : 직접노무비 3~9억원(100㎡) → 1.5~3억원 (75㎡)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01,452	919,028	182,424	△16.5%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550㎥/min
- 유수지 14,000㎥
- 유입 · 유출관로 L=23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구조물 터파기(B/H0.7+크람셀1.53) 작업효율(E) 조정 : 0.2 → 0.3(보통)

○ 콘크리트 타설방법 변경 : 인력 타설 → 펌프카 타설(50m3/일)

○ 펌프장 쉬트파일 매몰수량 오류분 수정 : 576본 → 250본

○ 버팀보 이음 강판 구멍뚫기 방법 변경 : 인력 → 기계(마그네틱 드릴 적용)

○ 말뚝박기 지층(토질주상도)상태 재검토 반영 : N치 조정

○ 띠장, 띠장우각부, 띠장사보강, 스트러트 등 연결 해체품 삭제

→ 2014년 품셈 H-BEAM 설치 및 해체품에 포함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763,960	15,529,980	1,233,980	△7.3%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토출관로(강관D2400) L=608m, 우수관거개선 L=2.67km
- 배수펌프장 구조물 : B15.9m×L25.05×H3.4~7.7m
- 로터리식 제진기 : W4.5m×H3.1m×3EA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유출관 기초 모래부설 면적 조정 : 360° 쌓기→ 180° 쌓기

○ PHC 파일항타 토질계수(토사) a 조정 : 1.1 → 1.0

○ 쉬트파일 항타 깊이 변경 : 항타깊이를 천공후 2.0M 적용

○ 쉬트파일 Pile lock 지수제 단가 조정 : 17,500원/kg → 12,000원/kg

○ 쉬트파일 토사 천공시 3윙비트 자재비 누락분 적용

○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조정

- 산재보험료 : 3.7% → 3.8%, 공사손해보험료 제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141,458	7,085,605	1,055,853	△12.9%

○○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선(B=9.5m) L=420m, 노면 재포장(B=9.5m) L=17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요율 수정 : 2014년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

○ 벌개제근 공정 작업반장 삭제

○ 철근콘크리트타설(VIB포함) 봉상후렉시블 항목 삭제

○ 시공이음면정리 품 조정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H-PILE + CHANNEL철거 : 설치비의 80% 반영 → 설치비의 50% 반영

○ 잡석 및 보조기층 운반품 조정

- 덤프 15ton(100%) → 덤프 15ton(80%) + 덤프 20ton(2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88,951	1,043,994	44,957	△4.1%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수지신설 V=1,700㎥, 배수관로(D75~250mm) L=15.2km
- 배수가압장 3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관 모래부설 품 조정 : 기계+인력 → 기계

○ 합판거푸집 3회, 4회 → 유로폼(배수지 제외)

○ H-PILE / Sheet-Pile 근입 및 뽑기 항발시 작업인부 삭제

○ 조립식 간이흙막이 작업시간 조정 : 뽑기 3분, 준비 0.5분

○ 볼트조이기 및 불기 삭제 : H-형강 설치 및 철거와 중복

○ 보차도경계석 일일 작업량 20% 증가 적용 : 2014년 표준품셈

○ 세륜세차시설 공사기간 15개월 적용 : 배수지 공사기간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044,600	4,687,100	357,500	△7.1%

○○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천제방(축제) 보강 1,000m, 친수공간 조성
- 지방도 1개소 숭상 등, 교량 재가설 1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조경석 쌓기품 조정 : 정원석 쌓기 → 유용석 쌓기로 변경

○ 순성토 쌓기 : 순성토 운반 및 쌓기 → 하상준설토 유용쌓기 변경

○ 아스콘 깨기 품 조정 : 4.6㎥/hr → 16㎥/hr

○ 현장사무소 규모 조정 : 가설사무소등 480㎡ → 310㎡ 변경

○ 골재단가 견적단가 조정 : 잡석 20,000원/㎥→13,500원/㎥,

- 혼합골재 16,500원/㎥→12,000원/㎥, 채움돌 23,000원/㎥→17,000원/㎥

○ 연구개발비 삭제 : 가설사무소등 480㎡ → 310㎡ 변경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899,000	12,201,000	662,000	△5.1%

○○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9,264㎥, 흙쌓기 54,345㎥, 순성토 60,478㎥
- 횡배수관 235m, 종배수관 200m, 수로암거 20m
- 교량 6개소(L=77m, B=8.5~12.0m), 아스콘포장 334a, 콘크리트포장 23a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포장깨기 조정 : 콘크리트 집토 삭제, 아스콘(2014년 표준품셈) 반영

○ 되메우기 다짐장비 조정 : 램마(100%) → 콤팩트(100%)로 변경

○ 순성토 운반속도 조정 : V1, V2(30㎞/hr) → V1, V2(35㎞/hr) 변경

- 현장내 운반거리 조정 : 1.5㎞ → 0.1㎞ 변경(운반거리 중복계상)

○ 교량 강관파일 이음 : 용접공 1인 삭제(전기용접품에 노임포함으로 중복계상)

○ 교량난간 높이 조정 : H=1,100㎜ → H=850㎜ 변경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872,430	9,444,313	428,117	△4.3%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12,228㎡, 비탈면 안전공(법면보호) 1,185㎡, 담쟁이 넝쿨 334본
- L형측구 952m, 산머루측구 443m, 종배수관 443m, 횡배수관 39m
- FRP옹벽 3,962m, EP옹벽 620㎡, 아스팔트포장 7,90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담쟁이 넝쿨 식재간격 조정 : 20㎝ → 50㎝ 변경

○ FRP 천공단가 : 2014년 품셈 개정내용 반영

○ FRP 보강그라우팅 반영구간 조정 : 3.962m→2,340m(불필요한 구간 삭제)

○ 표지판 기초터파기 조정 : 인력100% → 기계90% + 인력10% 조정

○ 교통안전시설비 조정 : 단계별 시공계획에 의거 시설물 및 교통신호수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493,550	2,202,190	1,291,360	△37.0%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오수관거(D200~250㎜) 15.5㎞, 압송관(D80㎜) 2.6㎞, 맨홀 551개소
- 배수설비(D50~150㎜) 22.1㎞, 오수받이 467개소
- 맨홀 펌프장 8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보통인부 조정 : 보통인부 0.27인 → (0.2+0.27)/2로 변경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비 조정

- D200㎜ 배관공 0.15, 보통인부 0.16 → 배관공, 보통인부 0.1인
- D250㎜ 배관공 0.16, 보통인부 0.17 → 배관공, 보통인부 0.11인

○ 조립식 간이흙막이 박기 및 뽑기 시간 조정 : 7.6분/㎡ → 5.5분/㎡

○ 맨홀 철재뚜껑 설치비 조정 : 보통인부 0.3인 → 재료비 5% 변경

○ 콘크리트 깨기 장비 조정 : 0.12㎥ → 0.2㎥, 적재비 삭제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759,000	8,232,100	526,900	△6.0%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2,010㎥, 흙쌓기 3,414㎥, 사각맨홀(1.20×1.20×1.50) 3.0개소
- 사리부설(t=20Cm) 1,092㎡, 콘크리트 포장 284.5㎡, 교량 2개소
- 식생호안(560×400×100) 848㎡, 식생매트 1,055.4㎡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강관파일 천공 후 항타 : 파일용접삭제 → 파일 시공길이 15m미만 제외

○ 스파이럴 강관 손료 오기정정 : 10.0m당 → 1.0m당

○ 그라우팅 밀크 품 조정 : 중급기술자 0.98인/㎥ → 0.43인/㎥

○ 장비조립 및 해체 : 용접공 및 기계장비 삭제

○ 강관파일 구입방법 변경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39,477	682,380	57,097	△7.7%

○○ 갯벌생태지구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진입도로 9,711㎡, 주차장 66,475㎡, 탐방로 B3.0m×L16,420m
- 교량 2개소 (B6.0×38.82m, B6.0×50.8m)
- 자전거쉼터 2개소 585㎡, 탐방로쉼터 4,49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깨기 시공량 변경 : 4.6㎥/hr → 16㎥/hr

○ 주차장 녹지구간 개량방법 변경 : 쇄석포설후 흙쌓기 → 일반 흙쌓기

○ 주차장, 야영장 잔디블럭포장 품을 하천공사 호안붙이기 적용

○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시공량 20% 증 조정

○ 가설방음판넬 자재변경 : 스틸방음판넬 → PE방음제품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7,714,287	16,717,597	996,690	△5.6%

○○ 1호교 보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형증설(H-BEAM 보강) 2경간(84ton)
- 탄소막대 매립보강 952.0m
- 교각 기초보강 62본(Φ356.6×9.2t, L=2,021.2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에폭시 주입품 조정 : 교량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이 아닌 사용중량을 키우기 위한 보강으로 보수품에 적용된 에폭시 주입량 품 제외

○ 기초코아 천공(Φ356mm, Φ125mm) : 2014년 구멍뚫기 품 적용

○ 수직보강재(270×145×10) : 현장 제작설치 → 외부가공후 설치

○ 말뚝 내부충전품 조정 : Prepacted con′ c → 레미콘 타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397,330	3,906,000	491,330	△11.1%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100,475㎥, 흙쌓기 16,082㎥, 터파기 6,326㎥, 사토 104,322㎥
- 차집관로 이설 D500, L=815m
- 여울보 1개소, 여울 3개소, 징검다리 1개소, 인도교 1개소
- 교목 1,164주, 관목 23,802주, 초화류 148,000본, 파고라 1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합판거푸집 한판 단가변경 : 17,700원/㎡ → 10,687원/㎡

○ 대나무 식재품 조정 : 조경공사 단식 식재품 적용

○ 현장사무실 사용일수 조정 : 24개월 → 36개월

○ 호안설치 돌붙임(0.5×0.6×0.7) 수량산출 뒷길이 조정 : 0.7m → 0.6m(평균)

○ 추이대 A,B,C설치 : 조경석 쌓기 놓기 → 조경 유용석 쌓기 놓기 적용

○ 목교 SOLE PLATE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보통 → 간단으로 변경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305,278	5,996,303	308,975	△4.9%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본선 L=380.0m, 접속도로 L=160.25m, 보도포장 L=108.0m
- VR관(D600mm) 435.4m, PE이중벽관(D300mm) 336.1m
- 아스팔트포장 5,064㎡, 탄성포장 3,02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경계석 설치품 조정 : 작업조건 양호에 따라 시공량 20% 증 조정

○ V형측구 거푸집 재료변경 : 합판거푸집 → 유로폼 적용

○ 와이어매쉬(#8, 150×150) 단가 조정 : 4,311원/m^2 → 2,080원/m^2

○ 콘크리트포장 줄눈 수량 오기정정 : 2,302m → 756m

○ 순환골재 사용 제외 : 장거리 운반으로 일반골재보다 비경계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15,029	1,373,792	141,237	△9.3%

○○제 재해예방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2,763㎥, 흙쌓기 7,618㎥, 순성토 5,507㎥
- 제체높이 H=1.2m 증고, 마루폭 B=4.0m
- Curtain Grouting L=125.0m(125공)
- 여수로 (H=1.2m~3.8m) L=23.5m, 방수로 (H=2.5m~3.0m) L=27.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주입공비(반용액) 1일 작업량 조정 : 1.0㎥/일 → 2.5㎥/일

○ 현장여건고려 주입공 보통인부 산출기준 조정 : 7인→2인(사선, 소운반 제외)

○ 여방수로, 암거공 타설방법 변경 : 레미콘 타설 → 펌프카 붐 타설

○ 그라우팅 주입관 손료 적용 : 1공/1회 → 50공/1회

○ 벤토나이트 자재단가 조정 : 300원/kg → 260원/kg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07,730	600,833	206,897	△25.6%

○○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71,758㎥, 흙쌓기 54,584㎥, 사토 39,440㎥
- 고정보 1개소, 교량확장인도 1개소, 보행데크 4개소
- 배수통관 11개소, 배수암거1개소, 취수통관3개소, 합성형 라멘교 3개소
- 식생호안블럭 29,344M2, 조경석쌓기 2,353M2, 조경석붙임 3,923M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흙깍기 장비조합 변경 : 도쟈 19ton → 백호우 0.7㎥

○ 가동보 형식 변경 : 회전식 가동보 → 여울형 가동보

○ 강재 거더 제작 : 2경간 연속교로 증감율 -3%적용

○ 징검다리 설치품 조정 : 조경석 놓기 → 중량구조물 설치

○ 되메우기 장비조합 변경 : 램머100% → 램머30%+진동로라(0.7톤)7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001,524	11,429,089	572,435	△4.7%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토 2,177㎥, 절토 489㎥, 터파기 17,479㎥, 되메우기 4,679㎥
- U형개거1.5×1.2(L=467m), U형개거7.0×1.5(L=485m)
- BOX수문(2.5×1.5@2, 2.0×1.5@1, L=17.2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깨기 고재처리량 누락 적용 : 50.24kg/㎥

○ U형 측구 철근 가공방법 변경 : 철근가공조립 보통 → 간단

○ 콘크리트포장품에 이중 적용된 와이어메쉬, 양생제 품 삭제

○ 가설교량공 품 조정 : 현장여건상 비계공 불필요 제외

○ 아스팔트유제(RSC-3,4) 단가조정 : 550원/kg → 800원/kg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957,990	2,576,760	381,230	△17.3%

○○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생태공원 : 흉관 93.5m, 측수로관 287m, 경계석(직) 596m, 경계석(곡) 219m 인도포장 611㎡, 울타리 255m, 투수콘크리트 1,065㎡, 게비온옹벽 262m, 데크 1식
- 사슴농장 : 소형고압블럭포장 669㎡, 게비온옹벽(H=3m) 50m, 계단설치 9EA 출입문설치 2EA, 메쉬휀스 26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게비온 설치 기계장비 조합 변경 : 굴삭기 0.7㎥ → 0.6㎥

○ 자연석판석 콘크리트 타설품 변경 : 레미콘타설 → 포장품 적용

○ 계단데크 아연도각관 및 STS셋트 앙카 수량 오기정정

○ 데크자재 STS 스크류볼트 단가 변경 : 130원/EA → 58원/EA

○ 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 조정

- (재+직노+관급/1.1)×1.86%+5,349천원 → ((재+직노)×1.86%+5,349천원)×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52,236	1,445,330	106,906	△6.8%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오수관거(D100~D250mm) L=10.55km, 펌프맨홀 5개소
- 우수관거(D300~D800mm) L=1.34km
- 배수설비(D100~D150mm) L=15.56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깨기 시공량 조정 : Q=4.6㎥/hr → 16.0㎥/hr

○ 폐기물, 사토 소운반 장비 변경 : 리어커 운반 → 경운기 운반

○ 가설사무소 면적 조정 : 직접노무비 기준 9억원 미만 적용

○ 레미콘 소운반 상차 품 조정 : 믹서트럭에서 직접 상차로 제외

○ 건설하도급대금수수료 요율 변경 : 0.070% → 0.081%, 50억원(추정가격)미만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546,180	3,052,544	493,636	△13.9%

○○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653㎥, 흙쌓기 31,407㎥, 순성토 26,163㎥
- 하수관부설 470m, 맨홀 13개소, 집수정 3개소, 배수암거(1.2x1.2) 122m
- 상수관부설 75m, 제수변설치 1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순성토 운반 덤프트럭 작업효율(E) 조정 : 0.65 → 0.9

○ 구조물 동바리 변경 : 교량동바리 → 암거동바리

○ 경계석 설치품 조정 : 작업조건 양호에 따라 시공량 20% 증 조정

○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조정

- 환경보전비 : 0.9% → 0.8%(기타토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91,901	658,449	133,452	△16.8%

○○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깎기 2,410㎥, 흙쌓기 506㎥, 터파기 2,953㎥, 되메우기 1,697㎥
- 암거 6개소, 여울 5개소, 배수통관 1개소
- 콘크리트포장 A=2,519㎡, 아스콘덧씌우기 A=31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 작업량 조정 : 후진진입으로 작업량 50% 증 적용

○ 현장내 소운반 장비 변경 : 경운기 운반 → 1.0ton 트럭 운반

○ 철근콘크리트 깨기 철근고재단가 변경 : 295원/kg → 325원/kg

○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3% → 1.86% + 5,349천원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 0.07% → 0.08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23,481	686,532	36,949	△5.1%

○○천 재해예방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축제 및 호안정비 3.0㎞, 식생블럭 설치 22,204㎡, 돌붙임 1,746㎡
- 교량 (L=39m, B=6m)-2개소, (L=25m, B=6m)-1개소
- 콘크리포장 10,122 ㎡, 생태습지 및 친수공간 조성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사토 운반속도 변경 : V1(25㎞/hr),V2(30㎞/hr) → V1,V2(35㎞/hr)

○ 면고르기(토사) : 인력0.18인+기계0.09hr → 기계0.09hr(인력삭제)

○ 구조물 되메우기 방법 변경 : 비다짐 → 다짐

○ 교량공 면고르기 : 인력 100% → 기계 100% 변경

○ 가배수로 설치자재 변경 : 흄관(1000㎜) 114본 → 파형강관(1000㎜) 38본

○ 중기운반비 조정 : 아스콘포장 미반영에 따른 포장장비 운반 삭제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225,290	4,962,580	292,710	△5.5%

○○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흙깍기 8,754㎥, 흙쌓기 2,567㎥, 사토 7,210㎥, 자연석 쌓기 2,420톤
- L형측구 591m, U형측구 449m, V형측구 195m, 배수관 577m
- 아스콘 포장 1,148㎡, 보도블럭 포장 11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포장깨기 조정 : 집토 삭제, 아스콘(2014년 표준품셈) 반영

○ 사토 운반속도 : V1(20㎞/hr),V2(25㎞/hr) → V1,V2(35㎞/hr)

○ 되메우기 다짐장비 조정 : 램마(100%) → 콤팩트(100%)로 변경

○ 조경석 쌓기품 조정 : 정원석 쌓기 → 유용석 쌓기로 변경

○ 가설사무실, 창고 면적 조정 : 350(100)㎡ → 230(8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623,020	2,916,790	706,230	△19.5%

○○마을 도로선형개량 및 교행지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B=5.0~7.5m) L=1.1km
- 교행지 설치 L=6.0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유로폼 자재단가 조정 : 훅클램프 1,620원/개 → 190원/개

○ 교통표지판 설치 터파기 조정 : 인력 → 기계

○ 차선도색(상온형) 자재단가 조정,

- 유리알(고휘도 100%) → 유리알(고휘도 50% + 일반 50%)

○ 가설사무실, 창고 중복 적용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99,827	288,530	11,297	△3.7%

○○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생태공원 : 흄관 93.5m, 측수로관 287m, 경계석(직) 596m
- 사슴농장 : 소형고압블럭포장 669㎡, 게비온옹벽(H=3m)=5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고려 도로경계석 작업량 변경 : 120m/일 → 작업량 144m/일

○ 사토운반 적재품 삭제 → 부지내 흙깍기와 중복

○ 게비온 설치 기계변경 : 굴삭기 0.7㎥ → 0.6㎥ (품셈 13-5)

○ 콘크리트 포장 중복품 제외 : 와이어메쉬, 비닐깔기 (품셈12-3-2)

○ 데크설치면적 조정 : 설치장소 구배등을 고려 기존 돌계단 재활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52,236	1,445,330	106,906	△6.8%

○○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상수관로 : D75mm-L=9,304m
- 가정급수 : D16mm-L=117m
- 유량계실 6개소, 감압변실 2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사토운반 덤프트럭 변경 : 2.5ton → 4.5ton

○ 아스콘 깨기 품 조정 : 4.6㎥/hr → 16㎥/hr

○ 아스팔트 기층포설및다짐 포설횟수 조정 : 2회포설 → 1회포설

○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미반영에 따른 추가적용

○ 골재운반 적재장비 계수변경

- 작업효율(E) 0.5 → 0.75 (골재장 야적상태가 양호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09,990	956,130	153,860	△13.8%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수저류조1 : B50.1m×L21.4m×H6.3m
- 우수저류조2 : B36.4m×L16.4m×H5.5m
- 펌프일체형수문 : B13.2m×L21.8×H4.3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Sheet pile 항타 깊이 조정 13m → 2m(천공과 중복도 고려)

○ 쉬트파일 Pile lock 지수제 단가 조정 : 17,500원/kg → 12,000원/kg

○ H-pile 천공(연암, T-4) 능력 조정 : Q=2.0 → 3.0

○ 잔디블럭깔기 품 조정 : 호안블록 붙이기(품셈 13-4-2) 적용

○ 강관압입장비 조립 및 해체 : 3일 → 2.5일

○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조정

- 건설하도급 : 0.06% → 0.081%, 기타경비 : 6.5% → 6.3%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236,089	6,593,573	642,516	△8.8%

○○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수관로(D100) L=4,075m
- 가압장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품 변경 : 불연속구간 → 연속구간(품셈12-4-1)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토운반거리 조정 : 10km → 5km

○ 아스콘 절삭 적용된 물량 적재공정 제외

○ 폐아스콘운반 공차시간 조정 : 35km/hr → 50km/hr

○ 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 조정

- (재+직노+관급/1.1)×1.86%+5,349천원 → ((재+직노)×1.86%+5,349천원)×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34,400	968,800	65,600	△6.3%

2. 건축 분야

○○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사무실 등
- 규　모 : 1,241.06㎡/ 지상1층, 지하1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사급자재비(토목) → 직접재료비로 반영

○ 관급자재비 →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으로 구분

○ 원가계산서상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 조정

(재+직노+도급자관급/1.1)×1.81%+3,294천원과((재+직노)×1.81%+3,294천원)×1.2중 작은값 적용

- 고용보험료 요율조정 : 노무비× 0.79% → 0.87%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345,160	2,312,386	32,774	△1.4%

○○ 기술연구소 시설 개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묘생산시설 2개동 개보수
- 옥탑저수조 주수로 배관교체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 품 개보수공사 감안 조정(품의 50% → 30%)

○ 철근콘크리트공사 1일 콘크리트타설량 조정(50㎥미만 → 100~300㎥미만)

○ 철골공사 부대철골가공조립 철공인수 조정(4인 → 3인)

○ 기계공사 PVC 철거배관 중량산출후 부산물 공제 반영

○ 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 국민건강, 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81,205	523,489	53,382	△9.2%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사규모 : 연면적 1,337.16㎡ / 지하1 지상2/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 영화관, 문화의집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조적공사 친환경베이스판넬설치 단가조정(견적가 → 표준품셈)

○ 금속공사 각관벽체틀 설치 단가조정

- 잡철물 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품

○ 석공사 고강도인조석붙임 공법변경(모르타르붙임 → 대리석붙임(습식))

○ 기계공사 스테인레스 강관 단가조정(거래가격 → 가격정보)

○ 가설공사 현장사무실, 가설창고 무근콘크리트 타설(경비)삭제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267,678	2,230,973	36,705	△1.6%

○○ 보훈회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규　　모 : 지상2층
- 건축면적 : 389.35㎡, 연면적 : 586.96㎡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가설공사 강관비계매기 수량 재조정(최고높이 → 높이 가중평균)

○ 석공사 테라죠붙임 노무비품 조정(돌공사 → 타일공사)

○ 금속공사 경량철골천정틀 수량 조정

○ 조경공사 잔디단가 조정 : 18,000원/㎡ → 5,000원/㎡

○ 폐기물수량 조정(철근콘크리트 중량 2.4톤/㎥→ 2.3톤/㎥(철거시 철근제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09,147	1,287,752	21,395	△1.6%

○○ 첨단유리온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업용 고정실 온실 설치
- 연면적 1,621.8㎡, 지상1층, 경량철골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기초 및 토공사 잔토처리량 조정(성토다지기에 사용되므로 삭제)

○ 온실 철골공사 일반구조용각관 과다할증 조정(10% → 5%)

○ 경량형강철골조립식 대가 조정(내력식 → 내력식과비내력식 중간 적용)

○ 알루미늄창호달기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적용

○ 기계공사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 변경 개별직종 노임단가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08,637	1,415,093	93,544	△6.2%

○○ 전시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시관 1동 475.92㎡, 영상관 123.12㎡
- 화랑 71.5㎡, 출입구 19.08㎡ 건립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목공사 합성루버설치 견적단가 → 일위대가(표준품셈 벽체띠장 적용)

○ 지붕기와해체 문화재품셈 → 기와철거(표준품셈 건축물구조체철거 적용)

○ 바닥공사 우드깔기 일위대가 조정(목공사 마루널깔기 적용)

- 건축목공 0.2인, 보통인부 0.12인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 벽체합판공사 일위대가 조정(목공사 벽체합판붙임적용)

- 건축목공 0.234인, 보통인부 0.026인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1인

○ 토목공사 사토운반 품 속도조정(V5=35㎞/hr → V5=50㎞/hr)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994,967	4,333,565	661,402	△13.2%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면적 1,821㎡ 지상 2층 노유자시설(장애인체육관)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구입방법 변경 : 사급 → 관급구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율

○ 유리공사 복층유리,강화유리 수량조정(프레임부분 제외 산정)

○ 플로어링보드 경질단풍나무 재료비 단가조정

- 91,300원/㎡ → 55,000원/㎡(가격정보)

○ 목공사 보통합판,내수합판 단가조정(가격정보)

- 보통합판 1급 단가조정 : 8,633원/㎡ → 7,872원/㎡ 등

○ 시스템마루틀설치 일위대가 조정(표준품셈 11-3-1 적용)

○ 공사원가계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요율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394,128	3,296,741	97,477	△2.9%

○○군 의료원 기숙사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상5층 연면적 1,471.1㎡ 20세대 기숙사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강관비계다리 삭제 및 강관비계매기 수량조정

- 강관비계매기 처마높이까지 산정

○ 팽이기초공사 일위대가 조정 (표준품셈 15-2적용)

○ 온수난방 축열층 일위대가 조정 (모르타르 비빔 품 삭제)

○ 비닐시트깔기 일위대가 조정 (내장공 0.07인 → 0.02인)

○ 토목공사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품 현장여건감안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112,555	2,048,383	64,172	△3.0%

○○ 도서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면적 3,296.89㎡ 지하1/지상3층 도서관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 기타경비 요율조정(6.2%→5.3%)

○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설치기간 조정(12개월 → 9개월)

○ 알루미늄시트패널(평판, 3㎜, 불소수지) 재료비 단가조정

- 120,000원/㎡ → 115,000원/㎡(물가자료)

○ 엘리베이터(장애인용) 15인승 : 사급 → 관급(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율

○ 토목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100%) 품 조정

- 다짐부분 램머30%+핸드가이드70% → 핸드가이드 100%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321,644	5,117,589	204,055	△3.8%

○○ 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면적 442.56㎡ /지상3층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 요율 조정 : 8.9% → 8.4%

○ 콘테이너가설사무소 일위대가 조정(2014년도 품셈 적용)

- 비계공 0.78인 → 0.39인, 특별인부 0.4인 → 0.19인

○ 모르타르바름 일위대가 조정(2014년도 품셈 적용)

○ 수밀코킹 일위대가 조정(2014년도 품셈 적용)

- 코킹공 0.03인 → 코킹공 0.015인, 보통인부 0.007인

○ 토목공사 사토운반 적재작업 삭제 : 터파기 공종과 중복제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487,404	1,472,008	15,396	△1.0%

○○전통문화전당 인테리어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면적 3,467㎡ /지상5층 ○○전통문화전당 인테리어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주요 심사내용

○ 접합유리,강화유리 일위대가 조정(표준품셈 16-5-2적용)

○ 석고보드취부설치 일위대가 조정(공구손료 삭제)

○ 스테인레스 플레이트 설치 현장여건 감안 일위대가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강판) : 보통 → 간단

○ PVC타일깔기 일위대가 조정(표준품셈 18-1-3 적용)

○ 공사원가계산상 제비율 누락 추가

-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04,584	2,300,548	104,036	△4.3%

○○○○ 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시관, 공연장 리모델링 615㎡, 증축 1,33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조정(최저값 조정)

○ 사토처리를 현장내 유용처리 변경

○ 목공사 마루틀설치 일위대가 조정(현장여건 반영)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립식

○ 합성목재데크 구입방법 변경 : 도급자재 → 관급자재

○ 조경석쌓기 일위대가 조정

- 조경석쌓기 →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039,866	2,921,966	117,900	△3.9%

○○ 전시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시관 1동 475.92㎡, 영상관 123.12㎡, 화랑 71.5㎡, 출입구 19.08㎡ 건립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복산정 삭제 등

○ 합성목재 루버설치 견적단가 → 표준품셈 일위대가 산정

○ 고건축 지붕기와해체 적용품셈 변경 적용

- 문화재품셈 5-1 → 기와철거(표준품셈19-1-2건축물 구조체별철거 적용)

○ 원목루버설치 일위대가 조정

- 건축목공 0.2105인, 보통인부 0.0345인 → 건축목공 0.033인

○ 우드깔기(플로어링보드) 일위대가 조정

- 건축목공 0.2인, 보통인부 0.12인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994,967	4,333,565	661,402	△13.2%

○○○ 생명미술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면적 : 1,460㎡ 지상3층 미술관 건립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 산식 조정

○ 콘크리트파일, 너도밤나무후로링 구입방법 변경 : 도급 → 관급

○ 벽체규조토조습보드 일위대가 조정

- 표준품셈 18-2-2 석고판 못붙임 적용

○ 무석면비닐계타일 일위대가 조정

- 표준품셈 18-1-3 적용

○ 사토운반 사이클타임 현지여건 감안조정

- 18sec(90˚) → 20sec (135˚)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831,446	2,733,754	97,692	△3.5%

3. 설비 분야

○○ 농공단지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등, 신호등 건주공사 및 지중선로 매설공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파상형전선관 배열 방식 조정 : 1열 배열 → 2열 배열

○ 교통신호등기 설치공사 케이블 수량 조정

○ 가로등 설치공사 케이블 수량 조정

○ 내선전공 인건비 수량 오류 조정 : 412인 → 253인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10.9% → 9.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수정 : (재+직노)×2.93%×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70,426	490,283	80,143	△14.0%

○○ 하수관거 정비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펌프 운전 배전반 시설 및 감시제어 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맨홀 펌프장 24개소 인입선 설치 품셈 적용 수정(전품 5-11 → 4-43)

- 전력케이블설치 : 구내 설치품 → 구외 설치품 적용

○ 아스팔트 절단·파괴·복구 감액 수정 : 240M

○ 펌프장 4개소 작동스위치 추가 : 오뚜기 레벨스위치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10.0% → 9.7%

○ 기타경비 제비율 조정 : 6.2% → 6.3%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98,440	370,333	28,110	△7.0%

○○ 문화전당 인테리어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등 전열설비 교체 및 배전반 등 동력설비 설치, LED 조명기구 교체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주요 심사내용

○ 관급자재비 추가(공사용 직접구매대상 물품) 반영 적용

- 조명기구, 분전반 → 관급자재료 적용

○ 전등설비공사 파이프행가 16C 미 반영분 적용

○ 냉난방 설비공사 수량 조정 : 파이프행가 및 노출배관 재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조정 : 2.96% → (직노+재)×2.93%×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47,103	410,656	36,447	△8.2%

○○ 예존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옥내 전등·전열설비 및 옥외 경관조명 설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에 따른 LED조명 적용

- 방전등 외 5종 142개 → LED조명 교체

○ 전력케이블 옥외설치 품셈적용 수정 : 전품 5-11 → 전품 4-34

○ 동별 접지방식 변경 및 품셈적용 오류 수정 : 전품 5-11 → 전품 3-38

- 개별 접지방식 1개소 → 8개소 단독접지 추가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6.0% → 6.6%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51,996	428,581	23,415	△5.2%

○○ 화장시설 건립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등·전열설비, 발전기 50KW 설치, 옥외조명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수배전반 관급자재 견적단가 조정

○ 전력케이블 옥외설치 품셈적용 수정 : 전품 5-11 → 전품 4-3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조정 : (재+직노+관급)×2.93%

○ 일반관리비 제비율 조정 : 5.0% → 6.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48,947	506,757	42,190	△7.7%

○○ 하수관거정비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맨홀펌프장 전기시설, 펌프장 및 유량조 원격감시 제어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제어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정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한 관급자재로 분리

○ 전신주 건주장소 지정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절단 수량 조정

○ 인입전신주~조작분전반~맨홀간 수평거리 수정 적용

○ 옥외설치 케이블 옥내 품셈 적용 수정 : 전품 5-11 → 전품 4-34

○ 퇴직공제부금비 제비율 조정 : 1.2% → 2.3%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56,396	407,708	51,688	△11.3%

○○시 궁도장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입간선 및 건축전기시설, 조명타워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옥내케이블 설치 공량 조정 : 전품 5-11 → 전품 4-34

○ 옥내 및 옥외 배관내 전선포설 방법개선 : 1열 → 2, 3열

○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모니터링장치 삭감

○ 조명기구(다운라이트 외 4종) 관급자재 단가조정

○ 가로등(LED 등기구 외 2종) 관급자재 단가조정

○ 퇴직공제부금비 제비율 조정 : 0% → 2.3%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53,493	303,236	52,920	△14.9%

○○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배전반시설, 건축전기시설, 정수시설 자동제어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옥외설치 전력케이블 동시배열 : 1열 → 2열

○ 관급 계측제어 공사분을 도급공사로 변경

○ 옥외가로등 설비 기초콘크리트 시공방법 변경

○ 계측설비 시험 및 설치 후 운영자 교육비 조정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9.7% → 10.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조정 : 2.93% → (재+직노+도급)×1.86%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47,835	1,209,800	138,035	△10.2%

○○ 테마거리 정비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로등 설치, 교차로 신호등 설치, 전력인입공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가로등제어기, 차량신호등철주, 신호등제어기 기초 앙카품 삭제

○ 신호등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포설 수량 조정 : 2,924M → 2,461M

○ 가교PE절연난연PVC케이블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 신호등 관급자재 단가 조정(조달3자단가 조사 적용)

○ 전선관 지중관 포설 배열 조정 : 1열 → 2, 3열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직노×10.3% → 직노×9.7%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11,757	366,347	45,410	△11.2%

○○ 체육관 신축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력간선설비, 옥외보안등, 전등, 전열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등 시중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옥외보안등설비 전선관 및 케이블 수량 변경

○ 일위대가 및 노임근거 공종변경 적용 : 40인 → 17인

○ 관급자재 조명기구 단가 조정 : 조달3자단가 적용

○ 태양광 발전공사 일부 품목 단가 조정 : 전문업체 견적가 적용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직노)×8.9% → 9.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40,700	309,406	31,294	△9.1%

○○ 갯벌생태지구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기인입설비,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단로스위치 1구 외 42종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옥외보안등설비 전선관 및 케이블 수량 변경

○ 일위대가 및 노임근거 공종변경 적용 : 조명기구 반복공정 90% 적용

○ 관급자재 분전반 가격 전문업체 조사 적용

○ 캠핑장 전열설비공사(옥외 자립형 콘센트함)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적용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직노×11.5% → 직노×9.7%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37,156	575,187	61,969	△9.7%

○○야구 경기장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옥외전력간선, 보안등, 전등·전열설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주요 심사내용

○ 난연접지용전선 외 10종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옥외 전력간선 및 보안등설비 전선관, 케이블 수량 변경

○ 전력간선, 전등설비, 전열설비 노임근거 공종변경 적용

- 동일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 90%적용

○ 관급자재 조명기구 단가 조정 : 조달3자단가 조사 적용

○ 기타경비 제비율 조정 : (재료+노무)×5.3% → 5.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37,537	522,280	15,257	△2.8%

○○지구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계펌프장 전기공사(계측제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제어용케이블(CVV) 외 7종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계측제어 기자재 단가 조정 : 전문업체 조사단가 적용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직접)×10.9% → 9.7%

○ 기타경비 제비율 조정 : (재료+노무)×6.2% → 6.3%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88,154	360,810	27,344	△7.0%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옥외인입설비, 수변전설비, 옥외보안등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외 8종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수량 및 노임근거 공종변경 : 8EA → 5EA

○ 사급자재 조명기구를 관급자재로 변경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관급자재 수배전반 단가 전문업체 조사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17,346	1,041,117	76,229	△6.8%

○○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옥외전력설비, 보안등, 경관조명, 체험관 전기공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경질비닐관 HI 외 59종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전등·전열설비공사 노무비 공량 변경

○ 관급자재 공원등 제어반 단가 조정 : 조달3자 단가 적용

○ 가압장 자동제어설비 단가 조정 : 전문업체 조사견적 적용

○ 고용보험율 제비율 조정 : (직노)×0.79% → 0.87%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23,276	403,202	20,074	△4.7%

○○문화전당 공연장 냉온시설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400RT) 교체 : 2대
- 냉온수기용 냉각탑(600RT) 교체 : 2대
- 냉온수기 및 냉각탑 배관(D250, D200, D50) 교체 : 35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버터플리이밸브 관급자재 분류 및 재료비·노무비 조정

○ 급수용 스테인리스강관(D150) 오류조정 및 수량 재산출

- 스테인리스강관(D150) 74m 삭제 및 재료비 및 노무비 조정

○ 고무발포 보온재(D150×40t) 68m 삭제 및 재료비 및 노무비 조정

○ 배관용 탄소 및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개소 변경에 따른 용접 품 조정

○ 냉온수기 및 냉각탑 배관 수량 변경에 따른 부속 재료비 등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78,855	450,839	28,017	△5.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악취방지시설 탈취설비 설치 1기
- 탈취탑 등 악취방지시설 2기
- 침사이송 콘베이어 등 설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주요 심사내용

○ 탈취탑, 처리 및 후숙동 침사이송 콘베이어 상세도 보완

○ FRP 성형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설치부분 도면 보완 및 설치 품 조정

○ 배관 지지대 제작설치 견적 반영부분 잡철물제작설치 품 적용

○ 질산화조, 저류조, 누액저장 PIT, 응집반응조 덮게 등 수량(중량) 조정

○ 스테인리스강관 설치에 따른 용접개소 품 분리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05,304	173,777	31,527	△15.3%

○○권 광역공설 화장시설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화장 및 봉안시설 기계설비 설치
- 장비 및 위생설비 설치, 가스 및 환기시설
- 냉·난방기기 및 전기방열관 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급수가압(부스터)펌프 및 팬코일유니트 관급자재 분류

○ 오수배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D125) 도면 및 수량 상이 조정

○ 가스누설차단장치 개별 반영을 세트(제어, 경보, 차단) 변경 적용

○ 옥외배관공사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인력 품 반영을 장비(백호우) 적용

○ 급탕순환펌프(0.75Kw) 및 이음매없는동관(D50) 설치 품 조정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D65) 설치 품 오류 조정 : 본당(6m)→m당

○ 화장실배관 스테인리스강관(D80) 및 경질염화비닐관(D100) 수량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90,616	573,380	17,236	△2.9%

○○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비 및 위생설비 설치, 가스 및 환기시설
- 냉·난방기기 및 주방 배기덕트 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추후 사용 진공온수보일러 내역 및 장비일람표 삭제

○ 화장실 스테인리스강관(나사) 배관 설치 품 할증 조정(증 20%)

○ 주방 배기후드(3,200×1,200×600) 설치 수량 및 설치 품 조정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D20) 설치 품 조정 : 본당(6m) → m당

○ LP가스 용기(50Kg) 시간당 기화량 및 연소기기 소비량 검토 후 자동절체기 및 조정기 등 규격 조정

○ 위생도기 외 39종 가격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4,083	49,465	24,618	△33.2%

○○ 가축분뇨 발효교반기 제조구매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발효교반기 제작설치 및 철거 2기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주요 심사내용

○ 발효 교반기 연결장비 등 수량 조정

- 하부 및 상부 대차 프레임 연결 강판, 형강 등

○ 잡철물 제작설치 및 도장 부분 재료비 및 설치 품 조정

- 프레임, 체인받침로울러, 구동부, 주행부 등

○ 발효 교반기 부산물 공제 수량 조정 및 처리비 반영

○ 구동부, 주행부, 프레임, 강판, 강관 등 단가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67,216	627,176	40,040	△6.0%

○○ 승화원 화장설비 제조구매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화장로 주연소기(대형) 철거 및 설치 1기
- 화장로 주연소기(일반) 철거 및 설치 3기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개선 4기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주요 심사내용

○ 대형 주연소로 잡철물제작에 따른 제작 및 설치 품 적용

○ 대형 및 일반 연소로 내화·단열 벽돌 설치 수량 조정

○ 약품탱크, 배관, 기기 등 보온공사 보온재, 칼라함석 등 수량 및 설치 품 조정

○ 열연강판, 형강, 단열벽돌, 세라믹모듈 등 단가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71,729	844,422	27,307	△3.1%

4. 용역(기술·학술·일반) 분야

○○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수지 V=1,700㎥, 배수관로(D75~250mm) L=24.4km, 가압장 5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용역기간 실공사기간으로 조정 : 25개월→ 23개월

○ 전기분야 기술자 소요인력수 조정

- 전력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대가기준 적용

○ 휘발유 가격 조정 : 1,889원/ℓ → 1,752원/ℓ (당월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적용)

○ 현장 사무원 급료 단가 조정 : 2014년 제조노임단가 적용

- 보통인부(84,166원) → 단순노무종사원(63,626원)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 2014.11월 변경 고시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54,320	1,075,000	79,320	△6.9%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거정비 L=3.4km, 유수지 1개소, 펌프 5개소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일반행정업무 항목 중복 용역기간 조정 : 38개월→ 37개월

○ 전기분야 기술자 중복 산정 인력수 조정

○ 현장 사무원 급료 단가 조정 : 2014년 제조노임단가 적용

- 보통인부(84,166원) → 단순노무종사원(63,626원)

○ 도서인쇄비 월간보고서 발행 횟수 조정 : 최종보고서 작성월 제외

- 38개월 → 3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330,625	2,231,945	98,680	△4.2%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정수장 Q=900㎥/일, 배수지 V=500㎥, 송배수관로 L=36.1km
- 가압장 2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산출단가 조정

- 재료비, 노무비 단가 기준 조정, 중복 산정된 기술료 삭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력수,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

- 기초조사 항목 삭제, 제경비 115% → 120%, 기술료 30% → 2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요작업량 조정

- 행정계획 부문 중복 인력 조정(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81,306	1,308,608	72,698	△5.3%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수저류조 V=31,500㎥, 배수로 확장 L=1.5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산출단가 조정

- 재료비, 노무비 단가 기준 조정
- 중복 산정된 기술료 삭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요작업량 조정

- 실사업면적으로 수정(보정계수 적용 기준면적 : 100,000㎡)

○ 기타 자문비 삭제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분야 직접경비와 중복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74,690	1,106,369	68,321	△5.8%

○○○ 연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문화정책 및 관련 현황 기초조사,
- 문화정책 비전 및 사업 추진계획 등 도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상여금 누락분 계상

○ 최종 보고자료 제출부수 오류 수정 : 100부 → 50부

※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자료 상이

○ 자문회의료를 2014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의거 10만원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0,000	109,966	10,034	△8.4%

○○ 하수관거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L=26.46km,
-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L=25.0k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기준점 측량 수량 조정 : 구간별 중복수량 조정

- 53점 → 45점

○ 하수도 관로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 (시가지+교외지) 평균 0.82 → 교외지 0.78

○ 현지검측인건비 조정 : 2014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37,592	227,346	10,246	△4.3%

○○간 지방도 확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향권내 환경영향 조사 및 분석, 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동 · 식물상 조사항목 조정

- 육수생물 조사 항목 조정

○ 소음·진동 조사항목 지점수 조정 : 5지점 → 6지점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73,400	161,700	11,700	△6.7%

○○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폐콘크리트 909톤, 폐아스콘 2,599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포장 깨기 두께 조정 : 0.2m → 0.15m

○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조정 : 철거후 고철과 분리하여 처리

- 단위중량 : 2.4ton/㎥ → 2.3ton/㎥

○ 운반거리 실거리로 조정 : L=16.5km → L=14.5km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0,180	87,100	3,080	△3.4%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정비 L=5.3km, 폐콘크리트 10,576ton, 폐아스팔트 867ton
- 폐기물운반 5,37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지장물 깨기 내벽두께 조정 : 0.2m → 0.15m

○ 철근 구조물 단위중량 : 2.4ton/㎥ → 2.3ton/㎥(철거시 철근 분리)

○ 사업물량 누락 추가적용

- 폐기물운반 : 4,635㎥ → 5,370㎥
- 폐콘크리트 처리 : 9,463ton → 10,576ton
- 폐아스팔트 처리 : 816ton → 867ton
- 건설 폐재류 : 410ton → 544ton
- 혼합폐기물 : 57ton → 99ton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가 액	증 가 율
280,580	319,550	38,970	13.8%

○○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을하수처리시설 1식
- 폐기물운반 4,822㎥, 폐아스콘 : 4,894㎥, 폐콘크리트 6,238㎥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폐아스콘 처리량 조정

- 노면파쇄물량 누락으로 추가 적용 : 3,261ton → 4,894ton

○ 폐기물운반거리 조정

- 현장에서 인접한 처리업체 거리 적용 : 25km → 10km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가 액	증 가 율
234,091	269,676	35,585	15.2%

5. 물품 제조·구매 분야

○○○ 입구 간판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구 간판(상징물, LED 문자)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물품구매 설치(제조원가계산)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제외

○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산소 소요량 수정 : 5,355ℓ/ton→ 6,300ℓ/ton

○ LED 다운라이트 수량 오류 정정 : 4개 → 5개

○ LED 스틱바 수량 오류 정정 : 5개 → 19개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6,949	74,877	12,072	△13.9%

○○○ 가이드북 제작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여행 가이드북 25,000부 인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인쇄 용지 소요수량 조정

- 표지 : 25연 → 21.43연(국전지 7절 적용)
- 내지 : 137.5연 → 102.38연(국전지 21절 적용)

○ 전자조판료 제외 : 가이드북 파일을 제공함으로 조판료 제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9,875	22,696	7,179	△24.0%

○○○조형물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형물 16개 제작·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물품구매 설치(제조원가계산)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제외

○ 앵커설치 품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앵커볼트 설치 품 적용

- 플랜트용접공 1.6인 → 철골공 0.24인, 특별인부 1.81인 → 0인

○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와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품 중복으로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제외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86,500	512,215	74,285	△12.7%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웹·앱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홈페이지 개편 및 웹접근성 확보,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최종 개발원가 산정시 개발언어보정계수 적용(0.8%)

- 원가산정시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언어보정계수를 미적용하여 적용

○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시 제경비 조정 : 125%→11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0,000	88,230	11,770	△11.8%

6. 시·군 자체심사 분야

○○문화체육공원 실개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실개천 조성 L=298m
- 조경석쌓기 464톤, 자연석판석포장 157㎡, 수목식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현장 설치물 목적 고려 : 조경석 쌓기 → 조경유용석 쌓기

○ 조경석 단위환산에 따른 조정 : 톤 → ㎥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08,734	322,660	86,074	△21.1%

○○○○ 다기능 명품숲길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식재공 1식(청단풍, 산철쭉, 개나리 등 12종)
- 시설물공 1식(팔각정자, 육각정자 등 7종), 포장공 1식(자연석 판석 64㎡)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돌계단쌓기 품 조정 : 조경석 쌓기 중 석공만 반영

○ 방향안내판 설치 품 조정 : 자재비에 설치비 포함되므로 중복분 제외

○ 유지관리를 고려한 포장공 조정 : 판석포장 → 강자갈 포설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3,000	139,000	14,000	△9.07%

○○○○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로 개설 : L=150m, 폭 1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주요 심사내용

○ 순성토 운반거리를 실제 거리 적용 : 10km → 5km

○ 법면보호공 설치 품 조정 : 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 씨드스프레이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9,000	222,000	27,000	△10.87%

○○○ 지역농협 혁신리더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육인원 447명, 교육시간 4회(1박2일)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교육준비 인건비 산정방식 조정 : 총사업비 25% 적용 → 실제 참여일수 적용

○ 강사비 지급 산출근거 수립 : 전라북도공무원 교육원 강사비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0,000	70,000	10,000	△12.27%

○○ 내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0.77km, B=8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주요 심사내용

○ 보조기층 단가 조정 : 견적서 단가 → 실제 소요 운반비 적용

○ 토공 비탈면 규준틀 조정

- 대절토 사면시 필요하나 비탈면 높이 2m 미만인 절토사면에 반영되어 이를 조정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97,000	547,000	45,000	△7.6%

○○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42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주요 심사내용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강관말뚝 본당 항타 수량 조정 : 9.58m(5.08+4.5) → 4.5m(근입깊이)

○ 목제데크 설치 품 조정 : 2014년 표준품셈 기준 적용

○ H형강 과다 규격 조정 : 49.9kg/m → 31.5kg/m

○ 조경수 식재 품 조정 : 2014년 표준품셈 기준 적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761,000	1,559,000	202,000	△11.47%

○○○유적 주변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실개천 조성 L=298m
- 조경석쌓기 464톤, 자연석판석포장 157㎡, 수목식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주요 심사내용

○ 현장 설치물 목적 고려 : 조경석 쌓기 → 조경유용석 쌓기

○ 조경석 단위환산에 따른 조정 : 톤 → ㎥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08,734	322,660	86,074	△21.1%

2014년 원가심사 사례집

Ⅲ. 부 록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3.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편람
4. 설계용역 대가기준
5. 원가심사 관련기관 홈페이지

[시행 2015.1.5][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8절 보칙

〈계약심사 운영 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

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율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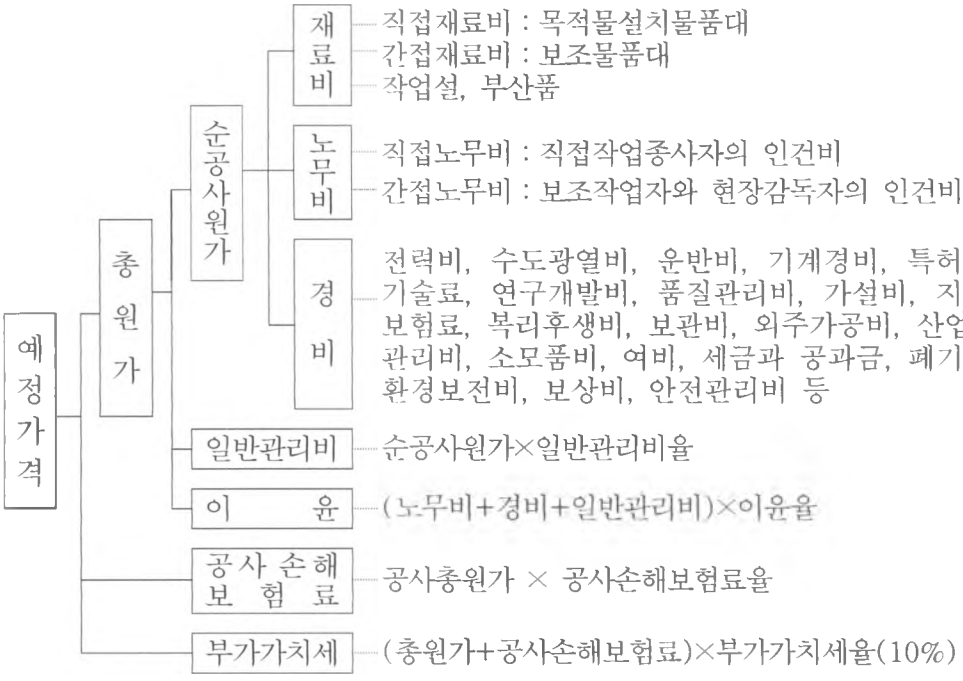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4.5 15.0 15.5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4.0 15.0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0 15.0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율"(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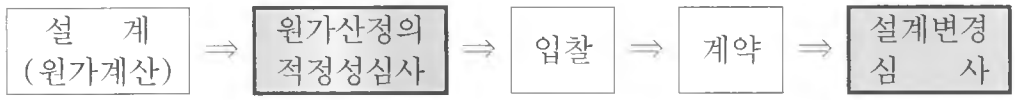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율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율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시 게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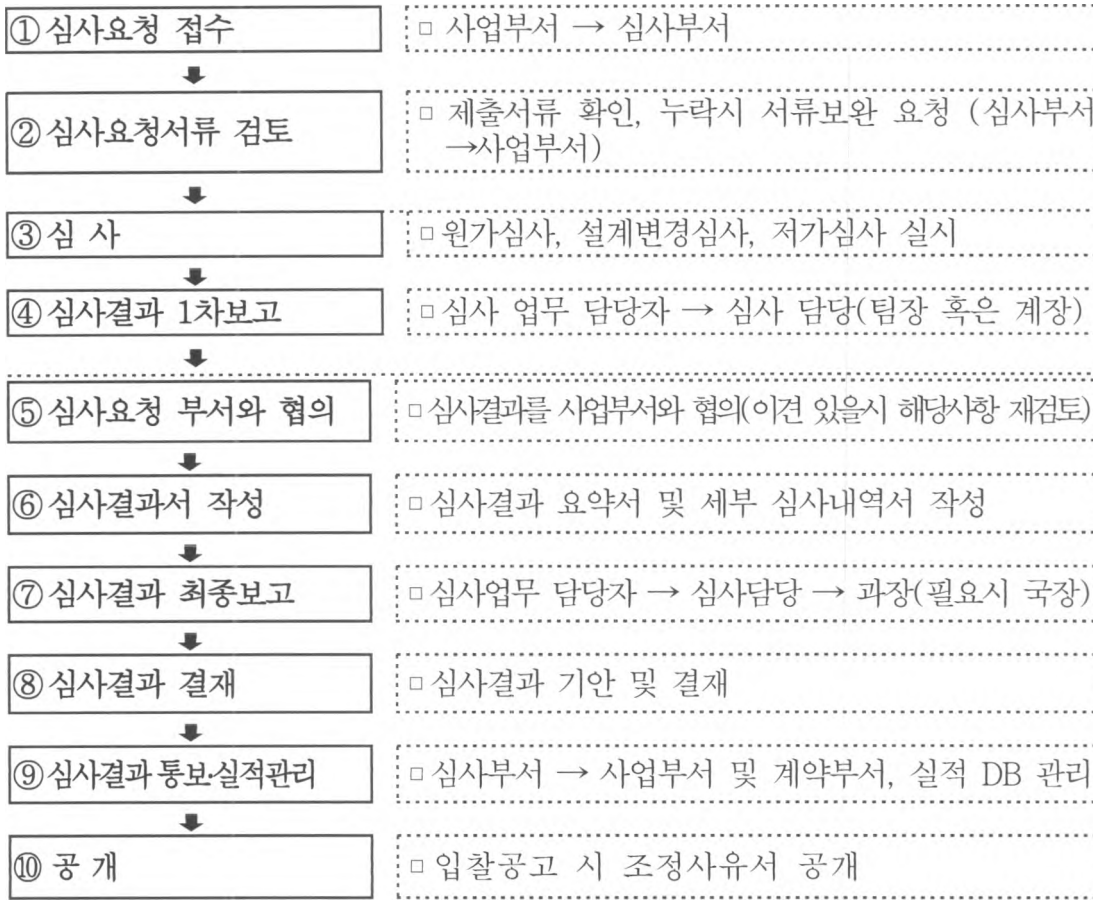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 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경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 설계금액 : 천원
- ○ 심사금액 : 천원
- ○ 절 감 액 : 천원
-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

□ 그 밖의 사항

-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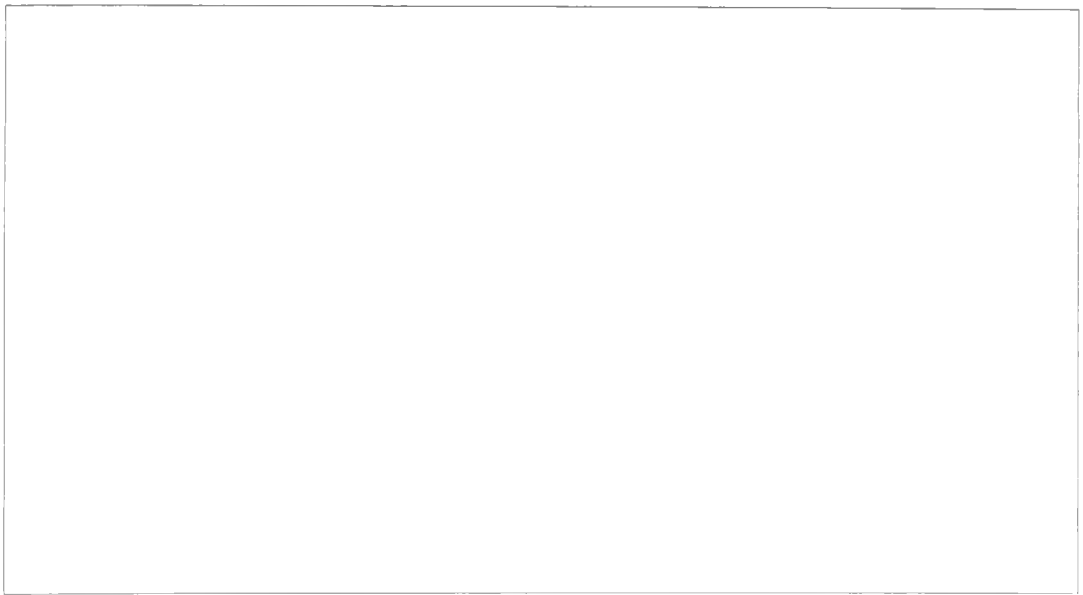

▣ 투 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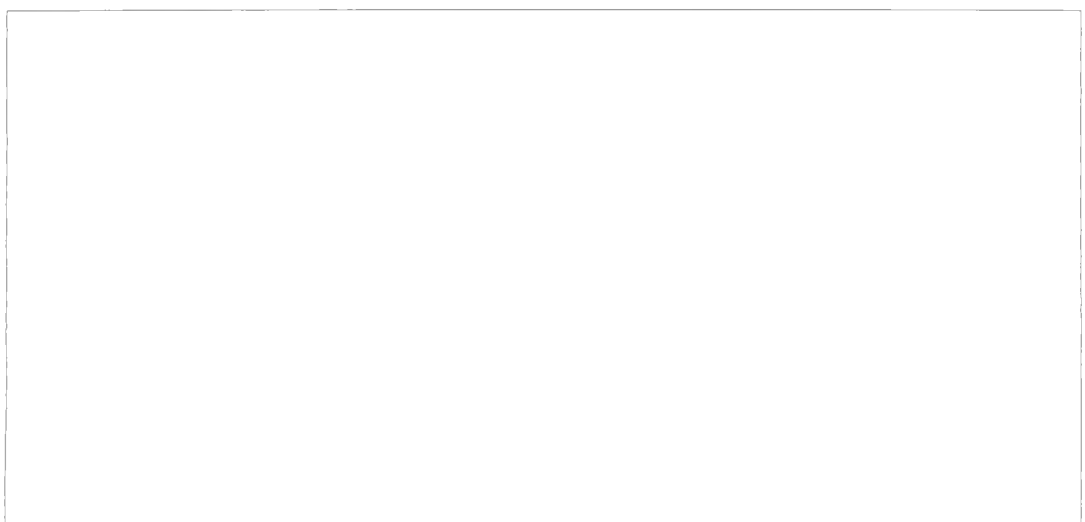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경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목 \ 구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			

발신명의	

2.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09-19 규칙 제 2747호
(일부개정) 2010-10-01 규칙 제 2822호
(일부개정) 2014-10-22 규칙 제 2940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에서 수행하는 원가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도의 원가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국·본부 <개정 2010. 10. 1>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 지방공기업
   라. 도 출연기관
   마. 도의회 사무처 <신설 2010. 10. 1>
   바. 삭제 <2014. 10. 22>
   사. 사군(구청 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사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개정 2010. 10. 1>

제3조 (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및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0. 10. 1>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또는 3억원(시·군 설계변경은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전 설계변경 및 원가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3.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시·군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0. 10. 1>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시·군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0. 10. 1>
4.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다목, 라목, 사목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개정 2010. 10. 1>

제4조 (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도에서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10. 1>

제5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가심사 대상업무중 원가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 구성 등)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원가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
3. 토목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자

③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0. 1>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원가심사 업무처리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 규칙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1)부터 (9)까지 생략

(11)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바목의"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한다.

(12)부터 (35)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공사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될 엑셀변환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2호서식〕

용역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 의 전산파일(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 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 "2", "3" 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 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3.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편람

1. 공사 원가심사
2. 용역 원가심사
3. 물품 제조 · 구매(인쇄포함) 원가심사
4. 설계변경 원가심사

1. 공사 원가심사

1 공사 원가심사의 의의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가격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확인,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 조정

※ 공사의 분류 및 개념

○ 원가심사대상 공사는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 규정

- **종 합 공 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 문 공 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적·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 **전 기 공 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2 공사 심사절차 (흐름도)

① 심사요청서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화일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 요청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 기계경비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등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 업무 담당자 → 심사 팀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원가심사팀장 → 과장(필요시 상급자)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 원가심사 요청서
- □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 기타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또는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3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 토목, 건축(5억원 이상),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3억원 이상) – 예 산 : 국·도비 사업 – 원가심사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 심사요청서(서식 1) ※ 참고기준 ·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출서류확인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화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 안된 경우 많음	
기 타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서 류 배 분	○ 복합공정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에게 심사요청 서류 배분 및 접수문서 공람 –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의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해당 팀의 담당자에게 배분 – 부대공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만 받아 총괄담당이 처리	

2) 심 사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원가계산서 검토	○ 원가계산 작성방식 ○ 각종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검토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 공사의 경우 주 공종 제비율 적용(일반관리비요율 제외) ○ 부가가치세 ○ 기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내역서 검토	○ 내역서의 수량 확인 ○ 노임할증 과다여부 ○ 공통 가설공사 등 ○ 중복공종 포함 ○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 작업분류의 적합성 ○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작업 부산물	
일위대가서 검토 (단가산출서)	○ 실적공사비 적용 ○ 표준품셈 적용 – 전기공사 : 배전·내선설비 공사에 따라 적합한 품셈 적용(전선관, 전선 등) ○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질의회신 내용 반영여부) ○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일위대가 적용의 일관성 유지 ○ 설계도서간 불일치 : 수량, 규격, 제품 등 ○ 단가산출서의 정확성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 소요장비 적정성(공사규모에 맞는 적정한 장비 사용여부 등) ○ 중기 가격 및 기계 손료 등 검토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등 적정단가 적용여부 ※ 부가세 중복 계상 등 검토 ○ 견적단가 확인(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가격 비교) ※ 품목별 최소가격 적용 ○ 일괄 견적가 경우 원가계산서 양식에 의거 재작성 요구 ○ 장비가격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4 결재처리 절차

1)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항 목	처 리 내 용	비 고
분야별 심사내역서 수합	○ 복합공정 공사(건축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승강기공사 등이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분야별 담당자의 심사내역 취합 – 총괄담당은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보고나 결재는 하지 않고 총괄심사결과서로 보고 및 결재 시행	

2) 심사결과(초안) 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공사-3 참고)를 작성하여 팀장 보고	

3)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항 목	협 의 내 용	비 고
심사내역서	○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 조정내용 등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후 의견반영	
기 타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4) 심사결과서 작성

항 목	처 리 내 용	비 고
총괄심사요약서 작성	분야별 심사내역서를 총괄하여 총괄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서식3 참고) 작성	

5) 심사결과 보고

항 목	보 고 내 용	비 고
결재 전 사전보고	○ 심사결과 요약서(서식 공사-2) 및 주요 심사내용(서식 공사-3)보고 - 특별히 사전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사전보고 생략가능	
기 타	○ 사전보고시 지시사항에 따른 재검토 등	

6) 결재 상신

항 목	처 리 내 용	비 고
결재 상신	○ 사전보고 결과완료 후 기안 및 결재상신 - 첨 부 : 심사결과요약서, 주요심사내용, 분야별 심사내역서, 기타 심사조건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부서 및 예산부서	

7) 심사완료

항 목	처 리 내 용	비 고
결재완료 후 처리	○ 결재완료후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일반문서로 발송 - 심사내역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e-mail 등을 활용하여 별도 송부 : 요청부서에 유선통보	
기 타	○ 심사근거서류 보관 등 ○ 심사실적 취합 및 통계관리	

5 관련 서식

<서식 공사-1>

공사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 조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계 약 방 법	
공 사 금 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내용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제경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환 경 보 전 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비						
이 설 비						
[총 공 사 비]						

<서식 공사 – 3>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기타사항

○ (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2. 용역 원가심사

1 용역 원가심사의 의의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경비산출 수량 및 단가 재산출,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반영시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설계간 불일치 사항 및 오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 용역의 분류 및 개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제3호에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을 원가심사대상 용역으로 규정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

· 학술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그 밖의 용역 모두를 말함

· 일반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 용역 심사절차 [흐름도]

① 심사요청서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화일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과업내역서 등 산출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 용역의 방법 및 기타 사항 검토 등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업무 담당자 → 심사 팀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원가심사팀장 → 과장(필요시 상급자)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 **원가심사 요청서**
-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 ▫ **인쇄물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 ▫ **기 타 참고자료**(계획서, 견적서 등)

3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일반학술연구용역(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사군 7천만원 이상) – 건설기술용역(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원가심사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 심사제외 사업 – 조달계약대상 및 심사대상 미만인 사업	
제출서류 확 인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업무관련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확인	○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 사

(1)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수량, 경비)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전라북도 여비 조례 적용,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적정 여부 – 일반관리비율 5%, 이윤 10% 이내 ※ 용역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이윤 및 부가세 미적용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미계상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경비세부내역	○ 유인물비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실소요금액 ○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 회의비 – 자문회의 수당 1일 10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상(실소요금액) ○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만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 감가상각비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2)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 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 내역서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여부 –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여부 ○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미포함 등	

3) 산출내역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산출내역서 검토 (수량 및 단가)	○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 단가적용 오류 – 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등 검토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 중복적용 여부 – 도면이나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적합한 자재 사용 여부 등 ○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수량단위 등) ○ 거래실례가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등) ○ 복합공정시 개별법에 대한 대가기준 적용 여부 등 ○ 표준품셈 적용 오류(품셈의 단서조항 등 확인) ○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운전경비 산정(재료비, 노임단가, 중기가격의 적정성 검토)	
기 타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4 결재처리 절차

1) 심사결과(초안) 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용역-3 참고)작성하여 팀장 보고	

2)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심사 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조정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 시행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내역 송부 의견청취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또는 적용근거 등 내용설명	
기 타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등	

3) 심사결과서 작성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총괄심사요약서 작 성	○ 분야별 심사내역서를 총괄하여 총괄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 작성	

4) 심사결과 보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결재 전 사전보고	○ 심사결과요약서 및 주요심사내용 보고	
기 타	○ 사전보고 시 지시사항에 따른 재검토 등	

5) 결재 상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결재 상신	○ 사전보고 결과완료 후 기안 및 결재상신 – 첨 부 : 심사결과요약서, 주요심사내용, 심사내역서, 세부조정내용, 기타 심사의견 등 – 수신자 : 심사요청부서, 심사요청기관의 계약부서 및 예산부서 ○ 보안등급 비공개 적용	

6) 심사완료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결재 완료 후 처리	○ 결재완료 후 문서로 발송 – 전자문서 발송대상 – 전자문서 발송이 되지 않는 기관에는 시행문 출력하여 일반문서 또는 FAX로 발송 – 심사내역서는 분량이 많으므로 e-mail 등을 활용하여 별도 송부후 요청부서에 유선통보	
기 타	○ 심사근거서류 보관 및 실적관리	

5 관련 서식

<서식 용역-1>

용역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내용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서식 용역-2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제경비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금 및 보 험 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발신명의	

<서식 용역-3>

주요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

☐ 기타사항

○ (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3. 물품 제조 · 구매(인쇄 포함) 원가심사

1 물품구매 등 원가심사의 개요

1) 제조 원가심사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와 관련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2) 물품(완제품) 원가심사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를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3) 인쇄물·기획편집 원가심사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참조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획편집료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4) 원가심사 제외 대상사업

원가심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가격이 없고, 경쟁성이 없는것, 견적단가로만 심사하는 의료장비 등을 심사제외

연번	품목별	세부 내용	비고
1	의약품류	임산부 철분제, 금연보조제, 영양제, 성병시약 등	
2	의료장비, 연구장비, 실험장비 등	각종 의료장비 및 연구장비, 실험장비, 실습기자재 등	
3	촬영장비 및 무대장비 등	촬영장비, 무대음향장비, 무대조명장비 등	
4	소방장비 등	응급장비, 구조장비, 특수장비 등	
5	소방헬기 부품 등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부품 등	
6	웹 서버 구축 등	웹관련 서버 구축 및 방화벽 등	
7	행사, 홍보 용역	공연, 홍보, 디자인, 영상홍보물 등 용역	

※ 물품 제조·구매의 개념 및 원가심사 관련 사항

-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임
- ○ 물품 제조·구매심사의 범위는 건당 2천만원이상

2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흐름도]

① 심사요청서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화일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청
③ 심 사	▫ 물품사양서 검토, 가격조사(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 제조원가분석 검토, 계약방법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업무 담당자 → 원가심사 팀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제조 : 일위대가서, 제조원가계산서 – 인쇄 : 인쇄물 산출내역서 – 물품 : 산출금액 세부내역서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원가심사팀장 → 과장(필요시 상급자)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계약부서, 예산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공통》

- 원가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제조

- 원가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사양서 등

□ 물품구매(완료)

- 원가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구체적인 규격서, 사양서 등

□ 인쇄물, 기획편집

- 원가심사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등
- 기획편집료(디자인) 산출기초조사서, 과업내용서

□ 수입물품

- 원가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수리

- 원가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 임차

- 원가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 임차대상·임차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등

3 주요 검토사항

1) 제조 원가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원가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추정금액 : 2천만원 이상 ○ 원가심사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원가심사 업무처리규칙
⬇		
서류검토	○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서류 미비시 사업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파악	
⬇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 www.pps.go.kr (조달청 물가정보)에서 월별 가격자료 다운로드 활용
⬇		
원가계산서 검 토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부산물등 : 발생재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적용함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제조, 공사노임단가 → 제조:중소기업중앙회 공사:대한건설협회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 참고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원가계산서 검 토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노무비+경비)X비율] • 나무관련 제조 9% 이내, 종이인쇄물 등 14%이내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등 ○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비율] : 제조구매25% 이내	– 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8조
⬇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 –5 참고)를 작성하여 팀장 보고	
⬇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등 조치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서를 총괄하여 총괄 원가계산서 및 심사결과요약서 및 주요심사내용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금액의 차액을 계산 절감율 산정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2) 물품(완제품) 원가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원가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추정금액 : 2천만원 이상 ○ 원가심사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원가심사 업무처리규칙
⬇		
서류검토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사양서,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서류 미비시 사업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심사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파악함	
⬇		
가격 조사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 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업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 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확인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5 참고)를 작성하여 팀장 보고	
⬇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등 조치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주요심사내용 및 세부심사내역서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금액의 차액을 계산 절감율 산정 - 절감율이 높을 경우 사업부서에 사전통보하여 절감사유를 설명함	

≪기타 사항≫

○ 소량 다품종 물품의 경우 업태를 고려 분리발주

물품 가격조사시 다품종 물품의 경우 물품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물품 취급 전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와 업종별로 분리 발주되도록 협의

(예, 전기재료·프린터잉크·문구류 혼합 구매, 각종 시약·과학 기기류 혼합 구매 등)

3) 인쇄물·기획편집 원가심사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문서접수	○ 원가 심사대상 사업 여부 및 서류검토 후 접수 또는 반려	원가심사 업무처리규칙
서류검토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서류 미비시 사업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불명확한 사양에 대해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파악	
인쇄물 규격 산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 인쇄물의 가로x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 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 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 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므로 유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 물가정보지, 특수지류업체 견적가, 현장 시장조사가격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산 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 사업부서에서 File 제공하므로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 : 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산정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투의 경우 실조판량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지출할 경우 인쇄물의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인쇄물 산출항목에서 제외함.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고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정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고
인쇄료 산 정	○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x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고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 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량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산정하지 않음 – 표지날개 접지비는 제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단, 250g이상 두꺼운 후지는 오시가공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x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x인원x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가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인쇄후가공업체 거래가 기획편집디자인 전문업체 거래가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기타 산정 오류 검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옵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옵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옵셋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온코트지, 아트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함에 유의)	
⬇		
일반관리비와 이윤요율 조정	○ 일반관리비와 이율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 옵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심사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서식 구매-5 참고)를 작성하여 담당 보고	
⬇		
심사요청부서와 협의	○ 심사내용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결재시행 전에 사전 협의 – e-mail 등을 이용하여 요청부서에 심사내역 송부 ○ 심사내용중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의견반영 등 조치 ○ 심사조건 등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협의할 사항	
⬇		
심사결과서 작 성	○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심사결과용약서 및 주요심사내용, 인쇄물 산출내역서 작성 – 요청금액과 심사결정 금액간 차액계산(절감율 산출) –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특수사항이 있는지 최종 확인	

※ 기획편집을 인쇄물과 분리발주할 경우 인쇄물의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필요시 필름출력비까지 포함 가능)되어야 하며, 인쇄물 산출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4 결재처리 절차

처리 절차	주요 검토내용	참고 사항
심사결과 최종보고	○ 결재전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결과 결재	○ 보고 후 기안 및 결재상신 – 첨부물 · 제조구매 : 세부심사 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 물품(완제품)구매 : 세부심사 내역서, 견적서 · 인쇄물·기획편집 : 인쇄물 세부심사내역서, 기획편집료 심사내역서 – 수신자 : 사업부서, 사업요청기관의 계약부서 및 예산부서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결재완료 후 문서 통보 – 문서발송 후 문서편철 : 결재완료문서와 수기로 받은 견적서를 편철, 보관 – 가격조사 한 업체정보 D/B 관리 : 주요 취급품목,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견적 협조 등급 등을 입력	

5 관련서식

<서식 구매-1>

물품구매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1","2","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구매-2>

물품제조(수리)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 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단위	산출금액 수량	산출금액 단가	산출금액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구매-3>

인쇄물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구매-4>

인쇄물 기획·편집 원가 심사요청서

시 행	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담 당			결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2","3"의 전산파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구매-5>

주요심사내용

▣ 건 명 :

☐ 개요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율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기타사항

○ (원가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4. 설계변경 원가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원가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2 설계변경 심사대상

○ 공사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또는 3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시·군은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10% 이상 증가)

○ **심사제외 대상**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도 원가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3 설계변경심사 절차 [흐름도]

① 심사요청 접수
- ▫ 사업부서 → 심사부서
-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청

⬇

③ 심 사
-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팀장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필요시 실장)
-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 심사부서 → 사업부서, 사업부서기관의 계약부서 및 예산부서
-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심사요청시 구비서류

- ▫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 ▫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6 관련서식

<서식 설계변경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4. 설계용역 대가기준

- 2015년 예산편성 지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2015년 예산편성 지침

□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17	6.34	3.02	1.08
1 억 원 까 지	2.97	5.93	2.85	0.90
2 억 원 까 지	2.37	4.74	2.26	0.72
3 억 원 까 지	2.17	4.33	2.06	0.72
5 억 원 까 지	1.96	3.94	1.89	0.72
10 억 원 까 지	1.73	3.47	1.66	0.63
20 억 원 까 지	1.59	3.19	1.53	0.36
30 억 원 까 지	1.54	3.08	1.48	0.36
50 억 원 까 지	1.51	3.02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48	2.94	1.41	0.25
200 억 원 까 지	1.43	2.84	1.37	0.23
300 억 원 까 지	1.42	2.83	1.35	0.23
500 억 원 까 지	1.38	2.78	1.33	0.23
1,000 억 원 까 지	1.37	2.73	1.30	0.23
2,000 억 원 까 지	1.35	2.70	1.28	0.21
3,000 억 원 까 지	1.34	2.66	1.25	0.19
5,000 억 원 까 지	1.31	2.64	1.23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공사비)$^{-0.0265}$-0.006822)×0.976, 실시설계요율=(5.0×(공사비)$^{-0.0229}$)×0.976, 공사감리요율=3.4816×(공사비)$^{-0.0386}$-0.00084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분 / 공사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 감리비[1]	시설 부대비
5천만원까지	3.80	11.40	2.70	1.08
1억원까지	3.57	10.72	2.53	0.90
2억원까지	2.84	8.53	2.02	0.72
3억원까지	2.59	7.78	1.84	0.72
5억원까지	2.36	7.05	1.68	0.72
10억원까지	2.08	6.23	1.48	0.63
20억원까지	1.92	5.72	1.36	0.36
30억원까지	1.85	5.53	1.31	0.36
50억원까지	1.81	5.43	1.29	0.27
100억원까지	1.76	5.29	1.25	0.25
200억원까지	1.71	5.14	1.22	0.23
300억원까지	1.69	5.10	1.21	0.23
500억원까지	1.67	4.99	1.18	0.23
1,000억원까지	1.64	4.92	1.16	0.23
2,000억원까지	1.62	4.83	1.14	0.21
3,000억원까지	1.60	4.75	1.13	0.19
5,000억원까지	1.58	4.69	1.11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3.16\times(\text{공사비})^{-0.023}-0.000634)\times0.928$, 실시설계요율=$(12.02\times(\text{공사비})^{-0.0323})\times0.928$, 공사감리요율=$2.3088\times(\text{공사비})^{-0.0271}-0.00262$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 공사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05	7.82
1 억 원 까 지	2.84	7.28
3 억 원 까 지	2.54	6.50
5 억 원 까 지	2.41	6.17
10 억 원 까 지	2.25	5.75
30 억 원 까 지	2.00	5.14
50 억 원 까 지	1.91	4.87
70 억 원 까 지	1.84	4.72
100 억 원 까 지	1.77	4.54
300 억 원 까 지	1.58	4.06
500 억 원 까 지	1.51	3.85
700 억 원 까 지	1.46	3.73
1,000 억 원 까 지	1.40	3.58
3,000 억 원 까 지	1.25	3.20
5,000 억 원 까 지	1.18	3.04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공사비)$^{-0.1025}$)×0.976,
실시설계요율=(49.2703×(공사비)$^{-0.1025}$)×0.976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신규사업 '14년 지침의 기준요율,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 공사비	요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79	11.38
3,000만원까지	3.07	9.19
5,000만원까지	2.14	6.42
1억원까지	2.01	6.01
2억원까지	1.60	4.80
3억원까지	1.46	4.38
5억원까지	1.33	3.97
10억원까지	1.17	3.51
20억원까지	1.08	3.22
30억원까지	1.04	3.11
50억원까지	1.02	3.06
100억원까지	0.99	2.98
200억원까지	0.96	2.89
300억원까지	0.95	2.87
500억원까지	0.94	2.81
1,000억원까지	0.92	2.77
2,000억원까지	0.91	2.72
3,000억원까지	0.90	2.67
5,000억원까지	0.89	2.64

※ 비 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7	0.18	0.20
0.1	0.28	0.31	0.34
0.2	0.48	0.53	0.59
0.3	0.66	0.73	0.80
0.4	0.82	0.90	1.0
0.5	1.0	1.1	1.2
0.6	1.1	1.2	1.4
0.7	1.3	1.4	1.5
0.8	1.4	1.5	1.7
0.9	1.5	1.7	1.9
1	1.7	1.8	2.0
2	2.8	3.1	3.4
3	3.9	4.3	4.7
4	4.8	5.3	5.9
5	5.7	6.3	7.0
6	6.6	7.3	8.0
7	7.4	8.2	9.0
8	8.2	9.1	10.0
9	9.0	10.0	11.0
10	9.7	10.8	11.9
20	16.6	18.4	20.3
30	22.6	25.2	27.7
40	28.3	31.4	34.5
50	33.5	37.3	41.0
70	43.4	48.3	53.1
100	57.2	63.5	69.9
200	97.4	108.2	119.0
300	133.0	147.8	162.6
400	166.0	184.4	202.9
500	197.0	218.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종 별 / 공사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 / 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7.30	8.11	8.92	
200	5.90	6.55	7.21	
300	5.18	5.75	6.33	
400	4.72	5.24	5.76	
500	4.40	4.89	5.38	
700	3.99	4.43	4.87	
1,000	3.64	4.04	4.44	
1,500	3.20	3.56	3.92	
2,000	2.93	3.26	3.59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 배전설비에서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율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 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1.13
1억원 이하	2.91	7.46	10.37
2억원 이하	2.76	7.06	9.82
3억원 이하	2.60	6.66	9.26
5억원 이하	2.47	6.32	8.79
10억원 이하	2.30	5.89	8.19
20억원 이하	2.18	5.58	7.76
30억원 이하	2.05	5.26	7.31
50억원 이하	1.95	4.99	6.94
100억원 이하	1.81	4.65	6.46
200억원 이하	1.72	4.41	6.13
300억원 이하	1.62	4.16	5.78
500억원 이하	1.54	3.94	5.48
1,000억원 이하	1.43	3.67	5.10
2,000억원 이하	1.36	3.48	4.84
3,000억원 이하	1.28	3.28	4.56
5,000억원 이하	1.21	3.11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times (\text{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 공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량토 치환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 반 개량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재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집수정과의 연결도 ⑤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참고자료』

1. 건축설계 대가요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타법개정]

(단위 : %)

종별 / 공사비 / 도서의 양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율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타법개정]

(단위 : %)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제2항)

[시행 2014.7.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6호, 2014.6.26, 일부개정]

요율 / 공사비	요 율 (퍼센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계
2,000만원까지	3.79	11.38	1.89	17.06
3,000만원까지	3.07	9.19	1.53	13.79
5,000만원까지	2.14	6.42	1.07	9.63
1억원까지	2.01	6.01	1.00	9.02
2억원까지	1.60	4.80	0.80	7.20
3억원까지	1.46	4.38	0.73	6.57
5억원까지	1.33	3.97	0.66	5.96
10억원까지	1.17	3.51	0.58	5.26
20억원까지	1.08	3.22	0.54	4.84
30억원까지	1.04	3.11	0.52	4.67
50억원까지	1.02	3.06	0.51	4.59
100억원까지	0.99	2.98	0.49	4.46
200억원까지	0.96	2.89	0.48	4.33
300억원까지	0.95	2.87	0.47	4.29
500억원까지	0.94	2.81	0.46	4.21
1,000억원까지	0.92	2.77	0.45	4.14
2,000억원까지	0.91	2.72	0.44	4.07
3,000억원까지	0.90	2.67	0.43	4.00
5,000억원까지	0.89	2.64	0.42	3.95

※ 비 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5. 원가심사 관련기관 홈페이지

원가심사 관련기관 홈페이지

추천 사이트	주 소	내 용
건설계약 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확인가능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가격정보, 자재단가, 관련법령 확인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등
국토지리 정보원	http://www.ngi.go.kr	측량노임단가, 수치지도 관련자료 등
한국건설감리 협회	http://www.gamri.or.kr	감리노임단가, 감리제도 관련자료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외국환 중개(주)	http://www.smbs.biz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환 경 부	http://www.me.go.kr/→정보마당→고시·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대한건설 순환자원협회	http://www.koras.org	품목별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한국원가 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등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http://www.sw.or.kr	sw노임단가, 사업대가의 기준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율 등

2014년 전라북도 원가심사 사례집

발 행 처 : 전라북도
발 행 일 : 2015년 1월
발행부서 : 전라북도 예산과 063-280-2175

편 집 인 : 전라북도 예 산 과 장 행정서기관 ▸ 곽 승 기
편집정리 : 원가심사팀장 시설사무관 ▸ 김 정 기
토 목 분 야 시 설 6 급 ▸ 유 문 식
계 약 직 ▸ 임 동 길
시 설 7 급 ▸ 설 상 일
건 축 분 야 시 설 7 급 ▸ 윤 여 찬
전 기 분 야 공 업 6 급 ▸ 서 영 민
기 계 분 야 공 업 6 급 ▸ 김 재 연
전산·물품분야 전 산 6 급 ▸ 채 진 석